

발 간 등 록 번 호

11-142100-000001-10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Ⅱ 유관기관 1편(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편

유관기관 (금융기관)

제1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
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2
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6
③ 신성장기반자금	18
④ 재도약지원자금	21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4
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6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8
1-3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32
1-4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34
1-5 수출인큐베이터사업	36
1-6 글로벌협력기반구축	38
1-7 온라인수출지원사업	39
1-8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41
1-9 연수사업	44
1-10 기술사관 육성사업	46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48
1-12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50
1-13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52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54
1-15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56
1-16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58
1-17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61

Contents

| 목차 |

1-18 진로제시 컨설팅	63
1-19 pre-회생 및 회생 컨설팅	65
1-2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67
1-2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70
1-2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73
1-23 내일채움공제	76
1-2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8

제2부 신용보증기금

2-1 신용보증	82
2-2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86
2-3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88
2-4 보증연계투자	90
2-5 투자옵션부보증	92
2-6 유동화회사보증	95
2-7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99
2-8 매출채권보험	101
2-9 잡매칭(Job Matching)	104
2-10 컨설팅	105
2-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107

제3부 기술보증기금

3-1 2021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10
3-2 기술보증	111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14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17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120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123
3-7 혁신성장 산업 지원 제도	126
3-8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129
3-9 문화산업완성보증	132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35
3-11 기후기술보증	138
3-12 R&D 보증	141
3-13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44
3-14 지식재산(IP) 평가보증	146
3-15 기술평가	149
3-16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제도	151
3-17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153
3-18 지식재산공제사업(구 특허공제사업)	155
3-19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57
3-20 기술신탁관리	159
3-21 기술임치	161
3-22 TTRS(증거지킴이)	163
3-23 보증연계투자	165
3-24 투자연계보증	166
3-25 엔젤투자연계보증	168
3-26 VC투자매칭특별보증	170
3-27 벤처확인평가	172
3-28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174

제4부 기업은행

4-1 2020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178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179
4-3 IP사업화자금대출	180

Contents

| 목차 |

4-4 IBK강소기업대출	181
4-5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182
4-6 IBK문화콘텐츠대출	183
4-7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185
4-8 IBK시설투자대출	186
4-9 IBK토지분양협약대출	187

제5부

한국수출입은행

5-1 2021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190
5-2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191
5-3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192
5-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193
5-5 기술금융 프로그램	194
5-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196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197
5-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199
5-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201
5-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02
5-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04
5-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06
5-13 해외사업금융	208
5-14 수입금융(수입자금)	211
5-15 이행성보증	213
5-16 무역금융(수출관련)	215
5-17 해외온렌딩	217



제6부 한국산업은행

6-1 온렌딩대출	222
-----------------	-----

제7부 한국무역보험공사

7-1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226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28
7-3 수출신용보증(매입)	229
7-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230
7-5 단기수출보험	231
7-6 중소중견Plus+보험	234
7-7 환변동보험	235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237
7-9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239

제2편

유관기관 (비금융기관)

제1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44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48
1-3 창업성장기술개발	251
1-4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254

Contents

| 목차 |

1-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256
1-6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59
1-7 산학연Collabo R&D	262
1-8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264
1-9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266
1-10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268
1-1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270
1-12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272
1-13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274
1-14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276
1-15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278
1-16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280
1-17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283
1-18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285
1-19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287
1-20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289
1-21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293
1-22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295
1-23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297
1-24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299
1-25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	302
1-2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304
1-27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306
1-28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309

제2부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312
2-2 사업조정제도	315



2-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318
2-4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	320
2-5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22
2-6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324
2-7 수출컨소시엄 사업	326
2-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328
2-9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330
2-10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 사업	331
2-11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332
2-1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	336
2-13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339
2-14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341
2-15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343
2-16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345
2-17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삼성전자)	347
2-18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포스코)	349

제3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1 소공인특화자금	352
3-2 성장촉진자금	354
3-3 일반경영안정자금	357
3-4 청년고용특별자금	359
3-5 혁신형소상공인자금	361
3-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63
3-7 상권정보시스템	366
3-8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369
3-9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371
3-10 소상공인 경영교육	372

Contents

| 목차 |

3-11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374
3-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376
3-13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378
3-1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381
3-15 스마트슈퍼 육성	384
3-1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386
3-17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88
3-18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사업	390
3-19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392
3-20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393
3-21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394
3-22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396
3-23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398
3-24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400
3-25 온라인 판로지원	402
3-26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404
3-27 백년가게 육성사업	406
3-28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409
3-29 희망리턴패키지	411
3-3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414
3-3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16
3-32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19
3-33 시장경영바우처지원	421
3-34 온누리상품권 발행	424
3-35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426
3-36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430
3-37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433
3-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점검	436
3-39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38



제4부 대한상공회의소

4-1 코참경영상담센터	442
4-2 계약서 검토 서비스	444
4-3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445
4-4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446

제5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1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	450
5-2 이동 KOTRA	452
5-3 해외시장조사	454
5-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456
5-5 수출상담회	457
5-6 무역사절단	458
5-7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460
5-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62
5-9 한국우수상품전	464
5-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466
5-11 디지털 마케팅(buyKOREA)	467
5-12 수출바우처사업	468
5-1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470
5-14 지사화사업	472
5-15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474
5-16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476
5-17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	479
5-18 클라우드편당/오픈마켓 연계 혁신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사업	481
5-19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483
5-20 KOTRA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485

Contents

| 목차 |

5-21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487
5-22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489
5-23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491
5-24 해외IT지원센터	492
5-25 GMV (Global Mobile Vision)	493
5-26 IT컨소시엄 수출지원	494
5-2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495
5-28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496
5-29 서비스기업 해외거점 지원 사업	497
5-30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499
5-31 콘텐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500
5-32 방산물자 교역지원	501
5-33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503
5-34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	504
5-35 KOTRA 해외시장뉴스	505
5-36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506
5-37 경제외교 활용포털	507
5-38 FTA해외활용지원센터	508
5-39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	510
5-40 수출인큐베이터	512
5-41 해외 GP센터(Korea GP Center)	514
5-42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516
5-43 해외공동물류사업	517
5-4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518
5-45 해외지식재산권 보호(IP-DESK)	519
5-46 국내복귀기업 지원	522
5-47 글로벌 M&A진출지원	524
5-48 KOTRA 글로벌 CSR 사업	526
5-49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 사업	528
5-50 KOTRA 아카데미	529



5-51 열린무역관	531
5-52 경제외교 활용 사업	532

제6부 한국무역협회

6-1 포춘 500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534
6-2 스타트업 해외 실증 테스트베드	535
6-3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운영	536
6-4 tradeKorea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537
6-5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538
6-6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540
6-7 수출현장 자문서비스	541
6-8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542
6-9 KITA 해외 바이어 초청 화상수출상담회	544
6-10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 상담회	545
6-11 국내 전문 전시회 개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546
6-12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547
6-13 Trade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	549
6-14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550
6-15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552
6-16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556
6-17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558
6-18 국내 대·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559
6-19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제공	560
6-20 스타트업 브랜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562
6-21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564
6-22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566

Contents

| 목차 |

제7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7-1 거래공정화	568
7-2 성과공유제 확산	573
7-3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576
7-4 상생결제제도	578
7-5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580
7-6 기술보호 상담·자문	582
7-7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584
7-8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586
7-9 기술보호지원반	587
7-10 기술보호 역량강화	589
7-11 기술자료 임치제도	592

제8부

창업진흥원

8-1 예비창업패키지	596
8-2 초기창업패키지	598
8-3 창업도약패키지	600
8-4 재도전성공패키지	602
8-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605
8-6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608
8-7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610
8-8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612
8-9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614
8-10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616
8-11 청소년 비즈쿨	618
8-12 실전창업교육	619
8-13 창업에듀	620



8-14 메이커 스페이스	621
8-15 창조경제혁신센터	623
8-16 스타트업 파크	625
8-1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626
8-18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628
8-19 창업존 운영	629
8-2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632
8-2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634
8-2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636
8-23 창업지원포털(K-Startup)	638
8-24 창업기업 확인	639
8-25 도전! K-스타트업	641

제9부 기 타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644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646
9-3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648
9-4 고용창출장려금(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650
9-5 산재예방요율제	652
9-6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654
9-7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656
9-8 근로복지기금지원	658
9-9 근로복지기금지원	660
9-1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662
9-1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664
9-1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666
9-13 기업복지 상담	668
9-1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669

Contents

| 목차 |

9-1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672
9-16 청년내일채움공제	674
9-1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76
9-18 청년 디지털 일자리	678
9-1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680
9-20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684
9-21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	686
9-2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688
9-23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690
9-24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692
9-25 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	693
9-26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694
9-27 관광플러스 팁스	695
9-28 관광선도기업 글로벌 육성 지원	696
9-29 관광기업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697
9-3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699
9-31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701
9-32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702
9-33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705
9-34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706
9-35 문화산업완성보증	708
9-36 스포츠 창업 지원	711
9-37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지원	712
9-38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지원	714
9-39 IP제품혁신 지원(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716
9-40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719
9-41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721
9-42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724
9-43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726
9-44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729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9-4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731
9-46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733
9-47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735
9-48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737
9-49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739
9-50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741
9-51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743
9-52 ICT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지원	745

제 1 편

유관기관 (금융기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제1부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48
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2	1-12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50
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6	1-13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52
③ 신성장기반자금	18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54
④ 재도약지원자금	21	1-15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56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4	1-16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58
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6	1-17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61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8	1-18 진로제시 컨설팅	63
1-3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32	1-19 pre-회생 및 회생 컨설팅	65
1-4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34	1-20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67
1-5 수출인큐베이터사업	36	1-2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70
1-6 글로벌협력기반구축	38	1-2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73
1-7 온라인수출지원사업	39	1-23 내일채움공제	76
1-8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41	1-2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8
1-9 연수사업	44		
1-10 기술사관 육성사업	46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일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일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일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용자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절차

-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용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 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의 용도와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용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④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⑥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⑦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정책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용자제의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⑩ 용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제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⑪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용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제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 ⑬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은 횡수산정 예외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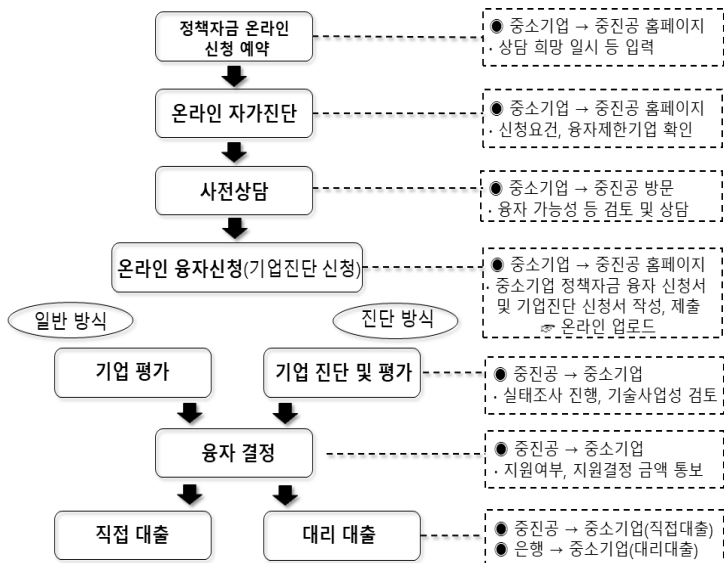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4,1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2,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4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5,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7,7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5,0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2015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2.2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Q&A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 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95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 기반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 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제품 사업화를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합니다.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60억원, 비수도권 7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동일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 금액을 1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희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1-1

①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분야 창업자금은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창업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비대면 분야 영위 기업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 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 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육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 이상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 (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시설 10년 이내(거치가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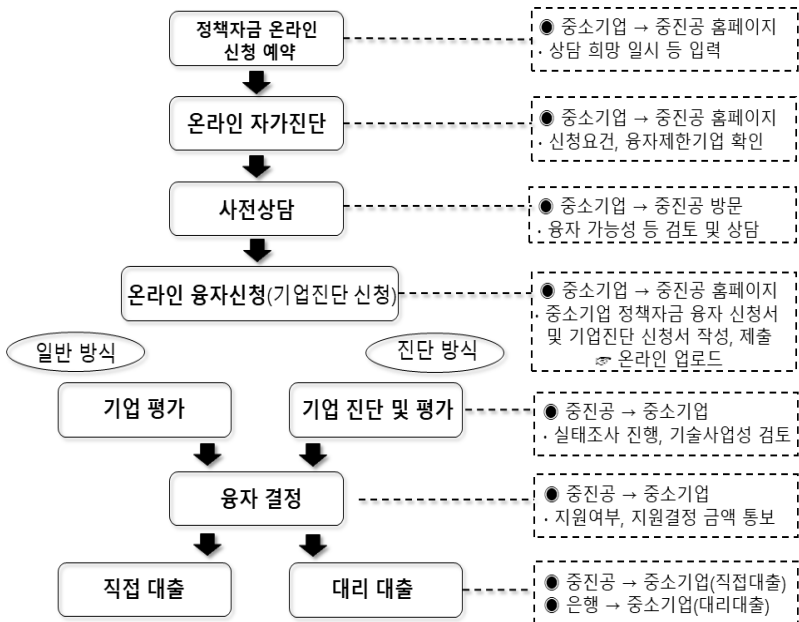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2,5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12,914개사 중 10,91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대상

-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방식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증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 까지 연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스케일업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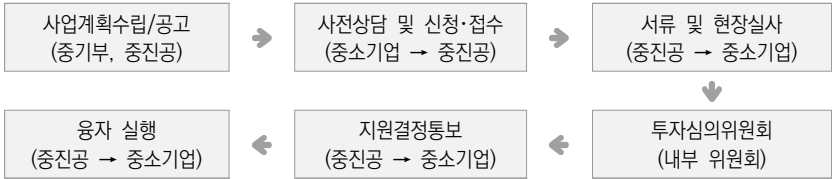
- 대출기간 : 3년 이내(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융자방식 : 中企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동화 후 자금지원
 -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1,4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성장공유형대출 10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0.1억원
스케일업금융 9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7.7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 합병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1-1

③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 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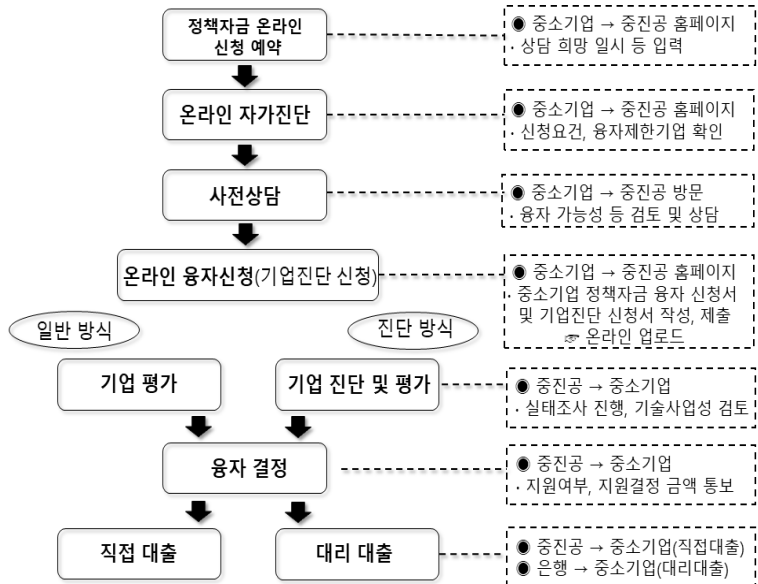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1조 7,7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2,765개사 중 2,44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6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④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

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을 통한 재기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내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자원을 추천한 물납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재창업 자금	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중 ①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상태 혹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면책, 회생, 신용회복,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④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 ▶ (재창업)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무역조정자금 - 2%고정금리
구조 개선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고정금리,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재창업 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전환자금 : M&A용도의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구조개선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따른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제출서류

- (공통) 용자신청서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처리절차

-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계획심사·승인

자금신청

자금심사·결정

- 구조개선자금

신청접수

-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재창업자금

신청접수

성실경영평가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지원규모

● 재도약지원자금 : 2,500억원

- 사업전환 1,050억원, 구조개선자금 55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재도약자금 3,1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위원회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경영위기 기업 대상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지원을 위해, 중진공이 채권은행과 협업하여 '기업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자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워크아웃제도보다 선제적이고 기업중심적인 구조개선·재도약을 지원하는 '21년 신규사업입니다.

1-1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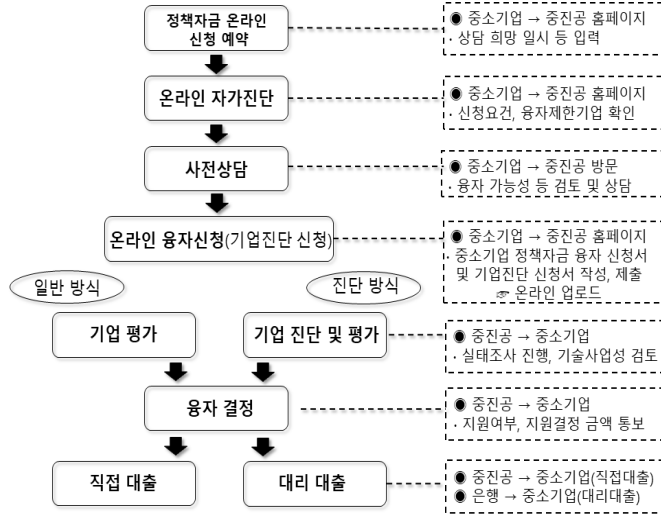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5,0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8,045개사 중 7,53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7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1

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 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대상

-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진출 스타트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및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B2C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한민국 소재 제품으로 선정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 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 (수출글로벌기업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용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용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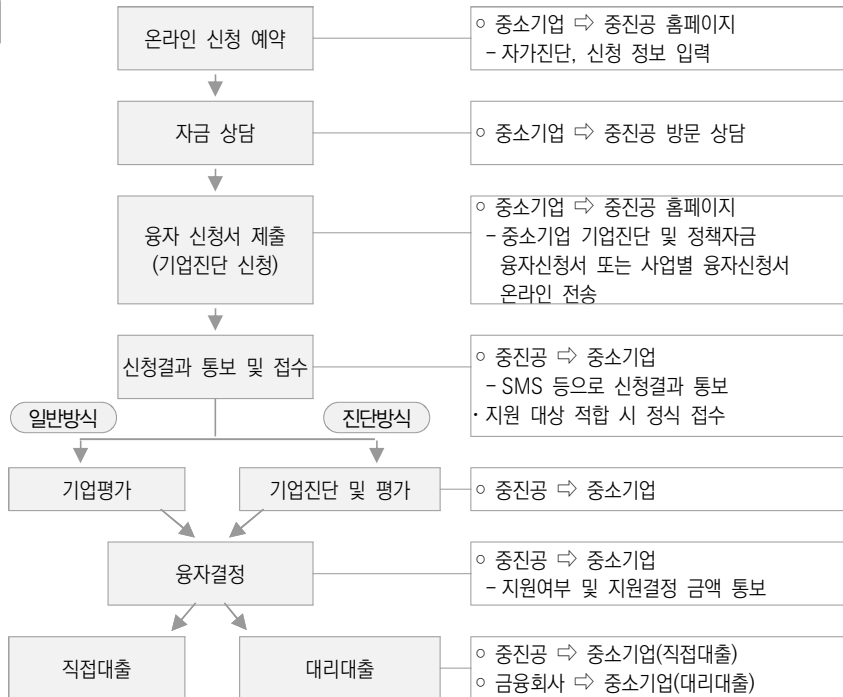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1,490개사 신청기업 중 1,38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2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1-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수출성장단계 스케일업 및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50%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 대상	지원한도 (백만원)
성 장 바 우 처	내수기업	221	814개사	전년도 직접수출 '0'인 내수 중소기업	30
	수출초보기업	207.5	766개사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30
	수출유망기업	188.5	419개사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50
	수출성장기업	121	242개사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80
혁 신 바 우 처	스타트업	57	191개사	창업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	30
	브랜드 K 기업	25	75개사	브랜드 K 선정기업	100
	규제자유특구	35	106개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0
	스마트제조혁신	59	180개사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00
	글로벌강소기업	121	242개사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신산업및K-bio	29	90개사	BIG3 지정기업 등 신산업·K바이오산업 영위기업	100

* 스타트업기업은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30백만원 지원

** 신청수요에 따라 배정예산 및 지원규모 변경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동일한 수출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법인
-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채·향락, 건강유해 등)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홍보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조사/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인증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원영역	지원항목
서류대행/ 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신산업 · K-바이오 영위기업 지원 신설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3D프린터 등 신산업 및 바이오 헬스산업 등 K-바이오 분야를 영위하는 혁신성장기업 지원

신청·접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글로벌역량평가) 수출기반, 수출기획, 수출실행, 지속성장, 공통역량 등 5개 분야 등을 평가 (고용영향평가 반영)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 운영지침 게시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수출마케팅활동

지원규모

- 3,125개사 내외(예산 1,064억원)
 - * '20년 지원현황(10월 기준) : 총 3,720개사 내외(본예산 998억원, 추경 341억원)

문의처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A.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Q. 동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내용을 어떻게 활용가능한가요?

A. 사업 선정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전략컨설팅,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수행기관을 통해 활용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 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수출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외에 참여 기업에서 원하는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홍보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수행기관 등록은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등록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1-3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촉진

신남방, 신북방국가 등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기술을 이전 받기 원하는 현지 기업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을 발굴 및 매칭하는 사업

지원대상

-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교류가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 (기술수출유형) 라이선싱, 합작투자, OEM생산, 설비이전, 기술영업, 제조공정이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내용

- 기술교류단 파견 기획 제공
 - 통역비, 현지 이동차량비, 기술교류상담장 등 수출활동 지원 현지기업발굴 및 매칭, 기업별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상 중재 지원
- 국내 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전문가 진단비용 지원
- 현지 기업과의 교류성과달성 가능시, 별도 검토를 통한 현지 이동차량 및 통역, 계약서 법률자문 등 상시교류 지원
- 기술교류플랫폼(www.G-Tep.or.kr)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술교류사업 참여 기업의 기술DB구축 및 국내외 기업간 상시교류 지원
- 한국정부와 현지정부간 협력(G2G)을 위해 현지 정부기관에 기술교류센터 설치를 통한 기술교류지원
 - (개소)이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카자흐스탄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코로나19로 교류대상국 현지 상황에 따라 온라인상담회로 추진가능

신청·접수

- ①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에 공급기술 등록
 - www.g-tep.or.kr접속 및 로그인 → PMS클릭 → 공급기술등록
- ② 공급기술 등록완료된 기업대상, 주관기관의 정기 기술교류 신청(국가별)

제출서류 ●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 동의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융복합기술교류촉진(해외기술교류) : 26억원

문의처 ● 중진공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7, 9678

● 해외기술교류 홈페이지(www.g-tep.or.kr)

Q&A



Q. 현지 기술교류상담회 참여시 항공, 숙박비도 지원해 주나요?

A. 아닙니다. 현지기업 발굴 및 매칭, 기술소개서 영문번역, 현지통역, 현지 상담장 및 차량임차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항공료, 숙박비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용어설명

공급기술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기업에 기술이전 하고자 하는 기술

수요기술 해외 현지기업이 국내기업에게 기술이전 받고자 하는 기술

1-4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산학연 R&D 및 기술교류협력 촉진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인프라를 조성하여, 산업생태계 중심 R&D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을 촉진

지원대상

- 산학연 기술교류 및 R&D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대학과 기술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운영

* 기술상담, R&D역량강화교육, 기술교류회, R&D멘토링캠프, R&D연계 등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 포럼·세미나, IR·피칭, 협력R&D 발굴·기획, 정책 제안 등 네트워크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운영

* 네트워크 분야 :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코로나19로 기술교류회 등을 온라인으로 추진가능

신청·접수

-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멤버십기업 가입 후 기술교류 프로그램 참여

- www.bridge.smtech.go.kr

- ②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공고를 통해 선정된 각 네트워크별 지원기관을 통해 기술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처리절차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멤버십 가입	프로그램 참여 신청	중소기업 수요기반 매칭	심층연계 및 기술애로 해소
기술혁신센터 멤버십 기업 가입	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심있는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출연연, 대학 등 기술전 문가 또는 보유기술 매칭	후속연계 또는 지속적 교 류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 애로 해소
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 bridge.smtech.go.kr	기술상담, 오픈오피스, 기술마켓, 기술교류회, 교육/세미나, R&D멘토링캠프 등		후속상담, 밀착상담, R&D 멘토링캠프, R&D연계추천 지원 등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지원기관 공고	지원기관 선정	네트워크 운영	운영결과 제출
중기부 (전문기관)	중기부 (전문기관)	지원기관 중소기업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참여	지원기관 → 전문기관

* 지원기관의 역할 : 민간 중심의 기술분야별 네트워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협단체 중 공고·선정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규모

- 융복합기술교류촉진(국내기술교류) : 11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 031-739-6910, 6911
-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bridge.smtech.go.kr)
- 기술분야별 네트워크 : 042-388-0751, 0752

Q&A



Q.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기술교류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인가요?

A. 맞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의 '멤버십기업'가입부터 모든 프로그램(기술상담, R&D역량강화교육, 기술교류회, R&D멘토링캠프, R&D연계 등)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5

수출인큐베이터사업

해외 사무공간 제공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12개국 20개소) 시카고, L.A., 워싱턴 D.C., 뉴욕, 베이징, 상하이, 시안, 충칭, 광저우, 호치민, 하노이, 프랑크푸르트, 도쿄, 방콕, 양곤,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모스크바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 주류·담배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등
- ▶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 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내용

-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1년차 80%, 2년차 50%)
- 사무공간(12~20㎡), 회의실, 사무집기 및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 전문가, 법률·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
- 공유오피스를 통한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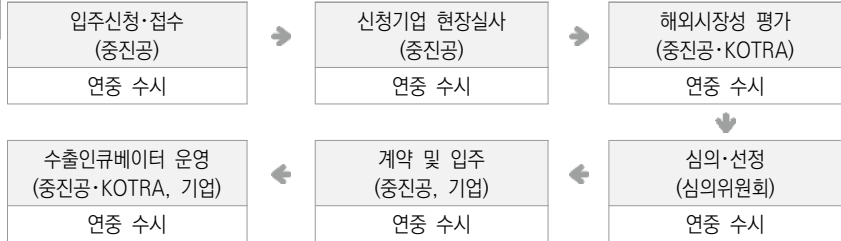
- 연중 수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 (제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우편번호: 52851)

심사·평가 주요내용

- 경영평가, 진출준비도, 해외시장성, 일자리창출도 평가 등
- (우대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코트라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청년창업사관 학교 졸업기업, 중진공 Family 기업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처리절차**지원규모**

- 예산 167억원

* '20년 예산 120억원, 연간 지원기업 수 275개사('20년 11월말 기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85, 9674, 967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사업-수출인큐베이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공유오피스는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정의 실비를 받고 임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을 지원합니다.

Q. 독립실의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입주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활동 실적에 따라 최대 4년(연장 2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연장을 신청하시면 입주 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용어설명

공유오피스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지역에 중·단기 출장 시,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용 사무공간 지원

1-6

글로벌협력기반구축

글로벌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협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원분야

● 분야별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글로벌 협력기반구축	-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기반 구축 -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등)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현지정착 지원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역내 진출지원 - APEC 역내 중소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우리 중소기업과 APEC 역내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신청·접수

-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kosmes.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협력관, 코리아데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글로벌사업처로 문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절차

상담

지원
(개별매칭 등)해외거점연계
(필요시)

사후관리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055-751-9688, 967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APEC 역내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APEC 중소기업 · 장관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매칭상담회 개최,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음

1-7

온라인수출지원사업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부터 홍보 마케팅, 해외 구매오피 발굴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단, 사행업, 도박업 등 공고사항에서 지원제외 대상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은 지원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고비즈 수출지원	· 제품특성을 고려한 동영상 등 상품페이지 제작 · 기업별 고유의 상품특화페이지(미니홈페이지) 제공 · (온라인 연계마케팅) 검색엔진마케팅, SNS(유투브 등)마케팅, 온라인매칭페어(상시) 등 기업 및 상품특성을 고려한 온라인마케팅 지원 · 유효인콰이어리(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온라인구매오피 사후관리 및 거래알선 지원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 무역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신용검증, 인콰이어리 대응부터 수출 계약 후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 * 바이어 거래협상 → 계약 → 물류·통관 → 대금지급 등 · 해외바이어의 국내 방문 시 무역전문가를 파견하여 무역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미니홈페이지 구축
 - 상품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4D* 촬영·웹북 등을 포함한 미니 홈페이지 구축
- 선택형 마케팅지원 강화
 - 기업·상품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선택형 마케팅 지원 강화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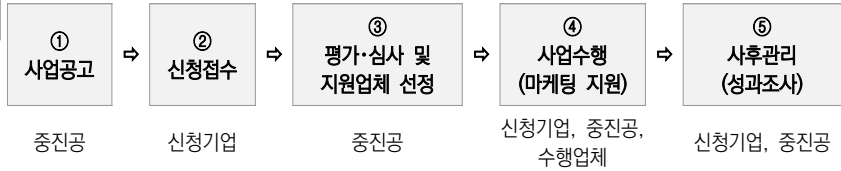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신청 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온라인수출 희망기업 2,000개사(3,684백만원)

* '20년 지원현황 : 2,100개사 지원 (예산 4,111백만원)

문의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한글) kr.gobizkorea.com

- (영문) www.gobizkorea.com

Q&A



Q. 수출이 처음인 온라인 수출초보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은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기반으로 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마케팅 연계지원, 거래성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중소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매칭

청년 등 구직자 대상 직무교육, 현장코칭·실습, 취업컨설팅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통해 청년 구직난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대상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 (참여기업) 구인애로 중소기업
 - (참여인력) 만 34세 이하 청년(장병) 구직자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참여기업) 대·중견기업 사업단과 협력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
 - (참여인력)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참여기업)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예정)기업 등 구인애로 중소기업(150개사 내외)
 - (참여인력) 해당 직무경력 1년 이상 실업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300명 내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 부동산 투기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 직무교육, 취업컨설팅, 취업지원서비스(AI모의면접, 인적성검사 등), 취업연계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구직자에게 맞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지원
 -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육생 훈련수당 지원(주당 10만원)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직무교육과 1:1 현장코칭·실습을 통해 기업현장에 적합한 숙련인력을 조기 육성, 공급하여 구인난 및 구직난 해소 지원
 - * (직무교육) 인력당 집합교육(3일 이내) 1회(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 * (현장실습) 인력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지원(최대 3개월)
 - * (현장코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등을 통한 코칭비(1회 50만원, 최대 12회)
 - * (취업연계) 실습종료 후 참여자 정규직 전환 유도(정책자금(인건비) 융자 등 연계지원)

신청·접수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의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ob@kosmes.or.kr)
- (참여자)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청년희망나눔 블로그의 각 사업단별 모집공고 참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참여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의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ob@kosmes.or.kr)
- (참여자) 기업인력애로센터(job.kosmes.or.kr)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제출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등

처리절차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회원가입, 구인공고

상담·매칭

취업연계

사후관리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사업단
선정기업선정·과
정개발구직자
선정·매칭

직무교육

취업연계

사후관리

●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

모집·매칭

협약체결

직무교육

현장코칭·
실습 실시

취업연계

사후관리

지원규모

● 청년구직자 일자리 매칭 (지원규모 제한 없음)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 대·중소상생 일자리 550명 내외

●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

- 참여기업 150개사 내외, 참여자 300명 내외 지원

* '20년 지원현황 : (취업실적) 3,259명 ('20.11.20일 기준)

· (대·중소상생 일자리) 12개 사업단, 참여기업 293개사, 457명 취업연계 (진행중)

· (현장코칭) 103개사, 189명 취업연계 (진행중)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후관리센터(1899-3001)

●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job.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 취업지원서비스 중 Si면접 응시 후 결과 공개가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정확한 취업매칭을 위해 Si면접결과 공개를 권장합니다.
공개해주시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한 취업매칭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취업매칭 담당자, 지원기업 담당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Q.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에 구직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 사업에 선정된 대기업(중견기업) 사업단별로 청년희망나눔 블로그에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 사업에 3개월 참여가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협약기간은 기업에서 가능한 기간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1-9

연수사업

중소기업 CEO 및 재직자 대상 전문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CEO 및 기술·경영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기술, 관리기법 습득 및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원내용

-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 품질, 창의인재(경영) 등 공개집합교육
- (맞춤연수)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
- (정책연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오프라인	직무역량향상연수	기술연수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공장운영시스템, 러닝팩토리실습, 제조자동화, 설계기술·가공기술, 스마트공장관리
			스마트융합	전기전자·PLC·ICT융합, CAD, 정보기술·IT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스틱·고무
			부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국제인증포함), 현장혁신
			창의인재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문제해결형 코칭연수)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기업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인터넷연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는 연수로 직무, 소양교육 및 MOOC(온라인무료공개수업), 라이브 웹세미나	
		모바일연수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신청·접수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대상 교육 신설, 고도화(AI, 빅데이터 활용) 과정 확대
- (직무·정책·맞춤연수) <http://sbti.kosmes.or.kr>
- (온라인연수) <https://cyber.kosmes.or.kr>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무역량향상연수는 연수비 할인제도 운영,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21년 신규 개설)	30%

* 연수비 할인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증빙서류는 연수원 홈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연수신청

연수비수납
등록처리

연수참가

수료증발급

고용보험
환급(해당시)

지원규모

- 연간 50,000명 내외(직무·정책·온라인연수), 맞춤연수 400개사 내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 중소벤처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 중소벤처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 중소벤처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Q&A



Q.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카드로 결제시 고용환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업카드 또는 현금(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1-10

기술사관 육성사업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2+2)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

지원대상

- 생산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 - 전문대 연계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와 전문대
- 전문대 1개와 복수의 특성화고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사업단 구성

참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운영비 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학교	학생활동지원비,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학생	직업교육, 전문대 진학, 협약기업 취업, 산업기능요원 우대
기업	전문기술인력확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우대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단(특성화고-전문대)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처리절차

- (신규 사업단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중기부)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협약체결(사업단)

- (사업단 선정 후 추진 절차)

사업비 교부

중간점검

사업비 정산

사업성과평가

지원규모

- 지원대학 (9개대학, 18개 특성화고) (예산 2,898백만원)

* '20년 지원현황 : 12개대학, 18개 특성화고 지원 (예산 2,898백만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67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anhakin.mss.go.kr)

Q&A



Q.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사업단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운영 및 채용연계, 연수, 홍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합니다.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및 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참여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점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학교는 학과 운영비, 학생은 등록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학교	계약학과 운영비(학기 당 35백만원 ± α)
학생	기준등록금* 대비 학위별 차등** 지원 * 기준등록금('20년) : (석·박사) 290만원, (학사) 230만원, (전문학사) 180만원 ** 재직자(석·박사 65%, 학사·전문학사 85%), 동시채용형(10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석·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기업 현장으로 해결형 산학프로젝트 중심으로 논문 없이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학위를 부여하는 '프로젝트 학위제' 도입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참여대학은 사업계획서 제출(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처리절차

-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공고(중가부)

신청·접수

현장실태조사

대면평가

주관대학 선정

학과운영

운영실적 보고

사업비 정산

지원규모

- 지원대학 (49개 대학, 70개 학과) (예산 119억원)

* '20년 지원현황 : 50개 대학, 68개 학과 지원 (예산 114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818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anhakin.mss.go.kr)

Q&A**Q. 중소기업 대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 대표자는 계약학과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합니다.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 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1-12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업 수요 반영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 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참여 기업

▶ 고용보험가입 중소기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원내용

- 주요 프로그램

현장중심 교육	특성화고 마인드제고	취업역량 강화
① 맞춤형	④ 중소기업 이해연수	⑦ 전공동아리
② 1팀 1기업 프로젝트	⑤ 진로지도 프로그램	⑧ 현장학습 프로그램
③ 교수학습자료 개발	⑥ 교원직무 연수	⑨ 외부전문가활용

- (맞춤반) 3자(학교-기업-학생) 또는 2자(학교-기업)간 채용협약을 맺고 맞춤 교육 실시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참여학교)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anhakin.mss.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 (참여희망기업) 회사소개서(자유양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고용 보험가입내역서(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처리절차

- 사업 추진절차

계획수립

공고 및 학교선정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사업
운영 및 관리

사업평가

지원규모

- 전국 215개 특성화고, 341.1억원

* '20년 지원현황 : 전국 215개 특성화고, 346.3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맞춤형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A.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 배정시 우선 선정 대상 (3자 협약)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3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산 사업

성과공유 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인력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촉진

지원대상

-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 ① 경영성과급 ②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공제(내일채움공제) ③ 임금상승률
- ④ 우리사주조합 ⑤ 사내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⑦ 기타유형(인재육성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참여, 복지플랫폼 활용 기업)

지원내용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7년 미만 기업 해당)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점수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점수 부여
 - 일자리평가지표 도입 사업에 한함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및 존경받는 기업인 평가 시 점수 부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수시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도입)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서류(도입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평가하여 지정)
- (공통)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의 감소 여부 확인

제출서류

- 고시*유형별 도입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처리절차 ●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신청·접수(수시)

제출 서류 확인

승인

지원규모 ● (선정규모) 연간 2만개사 지정

* '20년 선정현황 : 약 2만개사 지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Q&A



Q. 세제지원 혜택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A. 성과공유 유형 중 경영성과급 유형으로 도입 지정을 받아야 하며, 경영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으로 최근 1년 이내에 35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우수 인재 양성 분위기 조성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인 등 6개 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7년 미만 기업 해당)
-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점수 부여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 중기부 일자리 평가 가점 부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성평가) CEO 의지, 일자리 양·질, 교육 훈련 정도 등을 방문하여 평가
- (정량평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근로환경, 교육훈련 등을 평가
- (심의위원회)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육성 노력, 인재육성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 심의

제출서류

- 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처리절차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접수

서면·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최종지정

지원규모 ● (선정규모) 연간 250개사 예정(연 예산 2억원)

* '20년 선정현황 : 280개사 선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Q&A



Q.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다시 신청을 하시면 지정일로부터 다시 3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

Q. 3년 미만의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요?

A. 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면 3년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가능하며, 재무제표 평가는 기본 점수를 부여하여 진행합니다.

1-15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 확산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간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 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선정

지원대상

- (신청대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등 유관기관 추천 및 국민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인 등 6개 업종은 제외

- (기업범위)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기업
- (대상) 평소 기업 활동을 통해 직원의 복지 증진과 사회 공헌 등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 기업인

지원내용

- 선정패
 - 중기부 장관 표창 수요
 - 트로피 및 동판(대표자 얼굴) 수여
 - KBS 1TV 방송 프로그램 출연
 - 존경받는 기업인의 성과공유 우수사례를 대국민 전파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과공유 도입 유도 및 사람중심 경영문화 확산
- * 프로그램명 : 청년일자리프로젝트 "사장님이美쳤어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존경받는 기업인 우수사례집 제작, 국민심사단 도입

신청·접수

- 중진공 담당자에게 메일을 활용하여 접수(omw@kosmes.or.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정성평가) CEO 경영 및 노력, 인재육성, 미래 경쟁력 제고 노력, 질 좋은 일터 구현, 사회공헌 등을 평가

- (정량평가) 성과공유 추진 노력, 성과공유 도입 실적 우수성, 교육 훈련 정도, 경영성과, 일자리 양 증가 등을 평가
- (발표평가) CEO 혁신 의지, 조직문화 및 성과우수성 등을 대표자가 직접 발표

제출서류

- 선정신청서, 성과공유기업 증빙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처리절차

-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신청서 접수

서면·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최종선정

지원규모

- (선정규모) 연간 12명 선정

* '20년 선정현황 : 10명 선정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5, 9829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 지원시책」참조

Q&A

Q.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후 지원 내용인 방송 프로그램 출연은 꼭 해야 하나요?

A. 네,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목적은 성과공유 우수사례를 대국민 전파하여, 중소기업 CEO의 성과공유 도입 유도, 청년 구직자의 중기 취업 인식 개선으로, 선정된 기업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성과공유 및 인재 육성 등의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1-16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CEO의 창업 전 단계 패키지 지원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등 창업 초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제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징수유예 포함)인 자 등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단, 예비창업패키지 지원기업은 제외)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창업인프라)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등
-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역량 등 체계적 기술창업교육 실시
-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 과정 집중지원
- (사업비지원) 최대 1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내)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지원
- (기술지원) 제품설계부터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기술 및 장비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연계, 투자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술경력자(만 40-49세) 선발 폐지 → 청년창업자 중점선발 및 양성(예정)
- 지역별 주력분야 선발확대
-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발심사) 서류심사 → 발표(PT)심사 → 심층심사 → 현장심사 4단계 심사
 - * 자격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모델, 기술성, 성장가능성 등 종합평가
- (성과평가) 중간·성공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사업화 진행현황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1. 사업공고



2. 사업대상 선정



3. 협약체결 및 지원



6. 후속 연계지원



5. 최종평가 및 졸업



4. 중간평가 및 계속지원

지원규모

☛ 1,065명(개사), 예산 968억원

* '20년 지원현황 : 1,035명(개사), 929억원

문의처

☛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수도권 및 강원	본교 (안산, 경기 구리)	031-490-1351, 1554, 1384, 1557, 1161
	서울	02-2130-1431~4, 1436, 1430, 1438
	인천	032-858-7859, 7860~1
	경기북부(파주)	031-949-9687~8
	강원(원주)	033-748-9267~9
호남권 및 제주	대전세종(대전)	042-862-9937~8
	충남(천안)	041-589-0834~8, 0840
	충북(청주)	043-903-9357~8
	광주	062-250-3034, 3031~3, 3039, 3042~3
충청권	전북(전주)	063-276-8218~20
	전남(나주)	061-331-8708~9
	제주	064-759-9647~9
영남권	대구	053-656-8177~8
	경북(경산)	053-819-5054~7, 5062
	부산	051-305-9930~1
	울산	052-276-8937~9
	경남(창원)	055-548-8050~4, 8020, 8062, 8064
본사	창업지원처	055-751-9835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17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 D.N.A. 분야 혁신창업기업 패키지 지원

D.N.A.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 글로벌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하 D.N.A.분야 (예비)창업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동 사업을 통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 등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공공 마감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 D.N.A. 교육) 우수한 D.N.A.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단계별 · 과제별 혁신교육 제공

① D.N.A 특화교육 : 국내 D.N.A. 현업전문가 및 대기업 협업교육

* 서울대, 카이스트 AI 대학원 및 NHN 등 대기업 참여('20년)

② 실전 프로젝트교육 : 세계적 AI 경진대회 플랫폼 'Kaggle'의 기술 프로젝트 해결 및 실전대회 참여 지원

③ 글로벌 대기업교육 : D.N.A. 분야 글로벌 대기업의 분야별 특화교육

* 글로벌 AI 선도기업(AWS, MS, NVIDIA, Intel 4개사, '20년 기준) 참여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탐타어 액셀러레이터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며 밀착 · 연합보육 실시

● (사업비지원) 최대 50백만원 이내(총사업비의 70% 이하)

* 입교팀 평가(중간 · 성공)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지급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분야 확대) ('20년) AI 분야 → ('21년) D.N.A. 3개 분야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선발심사) 서면심사 → 발표(영어 PT)심사 2단계 심사
 - * 자격 검토, 기술성 및 시장성, 신청 동기, 사업화 역량 등 종합 평가
- (성과평가) 중간·성공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사업화 진행현황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등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절차

1. 사업공고



2. 사업대상 선정



3. 협약체결 및 지원



6. 후속 연계지원



5. 최종평가 및 졸업



4. 중간평가 및 계속지원

지원규모

● 60명(개사), 109억원

* '20년 지원현황 : 60명(개사), 109억원

문의처

- 주요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업팀(02-6949-6817~6819)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start.kosmes.or.kr)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팀 신청의 경우 전원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신청자격 적격여부를 검토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치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사관학교에 선정된 후 현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중진공에서 안내한 계좌로 현금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18

진로제시 컨설팅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진로제시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연계지원

지원대상 ●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의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중소기업 혁신비투자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기업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 정책정보를 제공

●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90% 지원

구 분			투입일수	보수액(만원)
기초 진로제시	재무분석	일반	3MD	180만원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사업정리	일반분야		2MD	120만원
	전문분야**		1~3MD	60~180만원

* 불필요시 제외 가능

* 불필요시 제외 가능, 세무/노무/법무분야 각각 1~3MD 내에서 지원가능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불필요시 제외 가능

처리절차



지원규모

- 340여개 기업(예산 7억원)
- * '20년 지원현황 : 340여개 기업 지원, 기업당 평균 2백만원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홈페이지(www.mssmiv.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컨설팅 결과인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1-19

pre-회생 및 회생 컨설팅

회생가능성 높은 기업의 회생지원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채무자 회생 및 하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 대행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가능성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협업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 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단된 중소기업
- 협업법원으로부터 'Pre-회생컨설팅 사업 지원대상 추천서'를 받은 중소기업
 - * 협업법원 : 서울회생법원 및 지방법원(인천, 수원, 의정부, 광주, 창원, 대구, 대전, 부산, 청주, 제주, 전주, 청주, 춘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개인회생절차
- ▶ 조사위원이 별도 선임된 경우
-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내용

-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컨설팅 범위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대표자심문 답변서, 채권목록 작성
 - 시부인표 작성, 관리인조사보고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회계세무 자문 등

신청·접수

- 홈페이지(www.mssmiv.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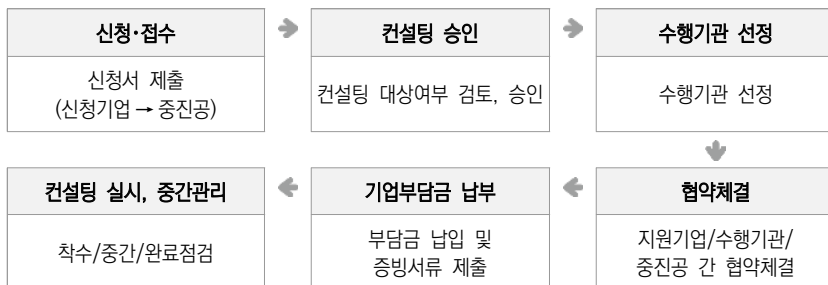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평가지 대표이상의 횡령, 배임사유가 확인되면 지원불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 * 홈페이지(www.mssmiv.com) 공고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0여개 기업(예산 25억원)
- * '20년 지원현황 : 기업당 평균 24백만원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홈페이지(www.mssmiv.com)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Q&A



Q. 기존 컨설턴트(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보수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지원대상 선정 후 중진공과 협약이 체결된 컨설턴트에 대한 보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20

레이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이저장비 및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기술개발) 자전거·해양레이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 (맞춤형사업화) 자전거·해양레이저장비(부품·소재 포함) 관련 사업화 추진 (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
- 우대조건(기술개발)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함
 -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퇴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우대조건(맞춤형사업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 레이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기술개발) 자전거·해양레이저장비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맞춤형사업화) R&D성공기술, 특허기술, 이전기술 등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후 맞춤형사업화 비용 지원

구 분 (지원비율)	항 목	내 용	비 고
기술개발 (75%)	자전거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참여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기술개발은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
	해양레저 장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맞춤형 사업화 (75%)	맞춤형 사업화 사업화코칭	• 지원한도 : 50백만원 이하 • 제품 디자인·설계 개선, 시제품·시금형 제작 •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 성능평가,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 홍보물, 포장/패키지 디자인 등	*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확인

신청·접수

● '21. 1월~2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로 실시
- 선정 관련 세부내용은 '21년 사업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처리절차

● (기술개발)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대면평가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보조금 지원

● (맞춤형사업화)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기술사업화진단

대면평가

협약체결

사업화지원

지원규모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18억원(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 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분야	해양레저장비 분야
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포함	해양레저장비 분야

* 관련 세부내용은 '21년도 사업공고문 참조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9854, 985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지원제외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또는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중복과제 지원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내 '21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개발, 맞춤형사업화) 사업공고문을 참조하세요.

1-2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진단을 통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하여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재기권 설정은 별도 운영)
- 13개 지방청별 지역 주력산업 등 탄력적 우대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업종 : 33402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내용

- 혁신역량 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를 서비스 수행기관에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소요경비의 50~90% 차등지원

매 출 액	정부지원 비율	정부 지원금
3억원 이하	90%	최대 50백만원 이내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 최대 3개 분야 패키지 지원 가능

● 바우처 메뉴판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컨설팅	기술 컨설팅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신사업 계획, 사업전환 등의 애로해결
	규제대응 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 관리법 대응 등

지원 분야	지원 메뉴	지원 내용
	재기 컨설팅	진로제시, Pre-회생, 회생컨설팅 등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구설계, 금형, 제품디자인 등
	기술개발관련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연구소 설립, 정보화 구축 등 전문가 비용
	기술지원 및 지적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지식재산권 소요비용 등
	규격인증	규격인증을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제품시험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설 계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마케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 분석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신청·접수

- 제조혁신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요건검토 → 서면심사위원회 → 현장 진단·평가 → 심의위원회*

* 지역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

처리절차

- 사업 프로세스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바우처 활용

지원 규모

- 1,800여개 사(예산 526.05억원)

* '20년 지원현황 : 총 1,637개사 (재기컨설팅은 별도)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
- 제조혁신 플랫폼(www.mssmiv.com) 공지사항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



Q. 제조 소기업인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A. 제조혁신 플랫폼(www.mssmiv.com)에 들어오셔서 커뮤니티-자료실에 '참여기업 사업 진행 관련 주요 FAQ'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2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중소기업 개발기술을 사업화 성공으로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는 사업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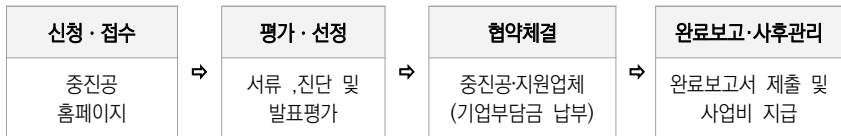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국제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80개사 내외)
- 사업화 지원
 - 개발 기술의 시장성 보안을 위해 기획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32개사 내외)
 - * 기획지원(사업화 기획), 기술지원(성능테스트,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시장테스트),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중분류	
기획 지원 (3개)	사업화 기획	기술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운영, 인사, 재무, 조직 등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 규모·경쟁사 조사, 제품화·양산, 판로개척,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기술 지원 (2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제품개선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포함)
	성능테스트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인증, 검증, 평가 * (예시)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마케팅 지원 (3개)	시장 테스트	시장조사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 (예시)시장시뮬레이션, 고객패널조사, 시장조사·분석 등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판매 전략, 가격전략, 고객관리, 매장구성전략, 소비자전략, 유통전략, 제품전략 등 수립
		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시장(반응)조사

- 신청절차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최대 1억원, 20개사 내외)

*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기술은행)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시장검증 및 사업화 기획을 사업화 지원으로 패키지 지원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 기술사업화 진단 * → 발표평가

* T(Technology) : 기술완성도, M(Marketability) : 시장성, C(Capability) : 사업화역량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사업화 지원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기업 추천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기능개선 지원

지원규모

- 기술사업화 진단(80개사), 사업화 지원(32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20개사) (예산 43.5억원)

* '20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202개사), 사업화 지원(32개사), 시장친화형 기능개선(20개사) (예산 43.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 055-751-98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Q&A**Q. 정부 R&D성공판정기술과 특허등록 모두 보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부R&D성공 판정 기술 또는 특허 등록 둘 중 하나의 자격 요건만 만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화(양산화, 매출)가 진행되지 않은 기술만 신청 가능합니다.

Q. 특허 출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업신청기간 내 특허등록을 완료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통상실시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23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하나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 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베타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기간

- 5년 이상

● 공제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천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 사업주 : 핵심인력 = 2이상 : 1 비율로 납부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 가입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 단, 가입기업과 특수관계인의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 없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21년 4월부터), 부동산업(21년 하반기부터) 공제가입 가능

신청·접수

- (방문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청약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중소기업)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재직여부 등

제출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 (핵심인력)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처리절차

공제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지원규모

- 제한없음
- * '20년 지원현황(11월말 기준) : 4,157개사, 10,491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4, 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연령·자격·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1-2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청년재직자)

-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34세)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 단, 기업과 특수관계인(최대주주,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경우 가입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내용

● 가입기간

- 5년

● 공제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월 최소 12만원 ×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월 최소 20만원 × 60개월)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공제금리

- 변동금리 적용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 가입혜택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신청·접수

- 중소기업협동조합(21년 4월부터), 부동산업(21년 하반기부터) 공제가입 가능
- (방문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청약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중소기업) 휴·폐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등
- (핵심인력) 중소·중견기업 재직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정부 및 지자체 자산 형성 지원사업(예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참여 여부 등

제출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 (청년)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필요 시)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가입 시)

처리절차

공제청약

가입심사 및 승인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성립

지원규모

- 3만명 내외 (정부지원금 예산범위 내)

* '20년 지원현황(11월말 기준) : 10,506개사, 30,371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4, 297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나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 방문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 방문가입 : 종진공 지역본(지)부 및 시중은행(기업, 신한, 우리)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제2부 신용보증기금

2-1 신용보증	82
2-2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86
2-3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88
2-4 보증연계투자	90
2-5 투자유선부보증	92
2-6 유동화회사보증	95
2-7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99
2-8 매출채권보험	101
2-9 잡매칭(Job Matching)	104
2-10 컨설팅	105
2-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107

2-1 신용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단,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업종 등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지원내용

● 보증 한 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보다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종 류	보 증 한 도
■ 고성장 혁신기업 -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150억원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수 집 (제 출) 자 료	자 료 수 집 경 로
신보 직접 수집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상담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승인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보증서발급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잔액 57.5조원으로 운용예정

* '20년 지원현황 (11월말기준) : 55.1조 (222,494개사)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창업기업에 대해 업력·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맞춤형 지원
고용창출기업 보증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거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SMART융합보증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 타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율은 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2-2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수요자 중심의 혁신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입니다.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 첨단제조, 에너지, 환경,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전기·자율차, IoT 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AR·VR, 첨단신소재, 인공지능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 ▶ 「보증심사방법 운용기준」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 보증취급유업종 영위기업
- ▶ 타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 수료자 또는 수행중인 자 및 중도 탈락·포기자
 - * 유사 지원사업 예시: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연계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 '기보 벤처캠프'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

-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정보제공 등을 복합 지원(사업계획 진단, 성장전략 코디네이팅, 시장 포지셔닝, IR 스토리텔링 역량강화 등)

● 금융지원

- NEST기업 액셀러레이팅 수행 평가등급 등을 반영하여 신용보증 지원, 투자 지원(신보 직접투자, 민간 액셀러레이터 Seed 투자, 협업기관 공동투자) 및 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등 우대

● 성장지원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컨설팅, 대기업 연계 및 네트워킹, M&A컨설팅 및 M&A보증을 통한 사업확장과 회수전략 지원, 거래소 시장별 맞춤형 IPO 지원

신청·접수

- 신보 스타트업 플랫폼(www.kodit.co.kr/startup)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상·하반기 연 2회 공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가정신, 기술성 및 개발능력, 제품·서비스 경쟁력, 지속성장가능성, 사업화가능성 등

제출서류

- 지원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선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1차선발(서류심사)

최종선발(발표심사)

- (지원절차)

최종선발

액셀러레이팅

금융지원

성장지원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 선발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 053-430-4374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3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학을 지역 창업거점으로 육성

기술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혁신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창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휴업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스타트업 준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10억원의 보증 한도로 R&D연구개발 자금 지원
- 스타트업 도전기업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의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2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퍼스트뱅크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의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또는 본격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30억원의 보증한도로 Credit-Line을 설정하여 자금 지원
- 퍼스트뱅크 플러스 보증
 - 기존에 Credit-line 설정을 통한 지원 이력이 있는 창업 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도약 단계 기업에 대하여 50억원의 보증한도로 자금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www.kodit.c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 신보가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절차 ● (처리절차)

신청 및 상담

자료수집 및 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약정 및 보증발급

● (처리내용)

- 신청 및 상담: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 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검토 신청 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 약정 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0.7%) 수납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4 보증연계투자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2배 이내로 운용하되, 미래성장성등급별로 차등적용

미래성장성등급	인수한도
K1등급 ~ K6등급	30억원
K7등급 ~ K8등급	15억원
K9등급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5년이내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처리절차 ● (보증연계투자 업무처리순서)

투자상담

투자조사

투자심사

투자결정

투자집행

사후관리

투자금 회수(EXIT)

지원규모 ● 6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0년 지원현황 : 598억원 투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어도 투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현재 신용보증 거래가 없더라도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여 투자 실행 전까지 신용보증을 사용 중이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M&A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전환사채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2-5 투자옵션부보증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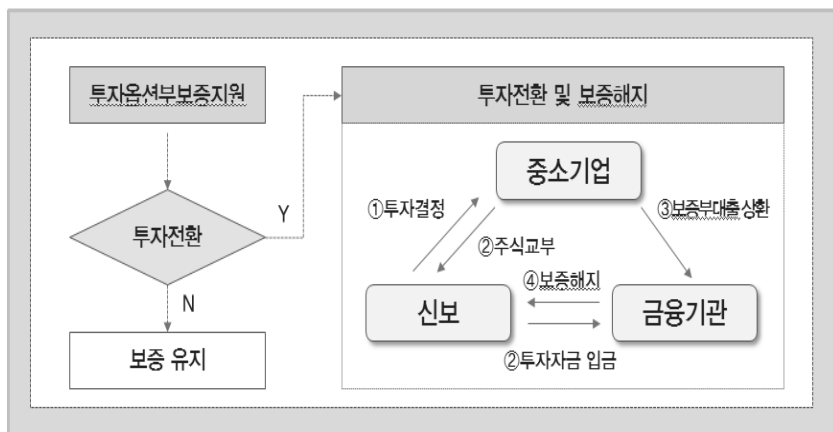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기한	• 5년으로 운용
보 증 료	• 0.5% 고정 보증료율
보증비율	• 100%
증자참여권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총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조건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신청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처리절차

- 투자유선부보증 업무처리순서

상담 · 접수

신용조사

심사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0년 지원현황 : 300억원 지원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증자참여권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 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 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용어설명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후속투자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2-6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 발행을 통한 보증지원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 미래성장성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지원 불가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지원 유의 기업

신용상태 취약기업	■ 최근 2개년 동안 EBITDA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미래성장성등급K5(회사채등급BB+) 이하) ■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기업가치가 0이하인 기업 ■ 총 차입금(이번 신청건 포함)이 당기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기업	■ 회생·기업구조조정 종결 후 2년 이내 기업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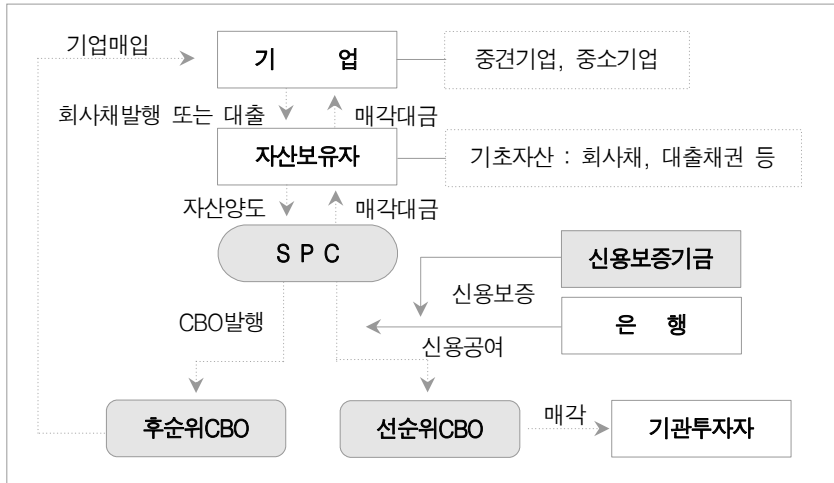
* 지원 유의 기업의 경우,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도개요

-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 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지원한도는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① 편입한도

- 중견기업

(단위 : 억원)

회사채등급	A-이상	BBB+	BBB	BBB-	BB+	BB	BB-
중견기업	700	600	500	400	300	200	100

* 최초 편입월로부터 6개월경과 시 상기 한도의 50% 추가 지원 가능

- 중소기업

(단위 : 억원)

미래성장성 등급	K20이상	K3	K4	K5	K6	K7	K8	K9	K10
중소기업	200	200	170	170	140	80	50	40	30

(주1)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기업어음 차환발행기업 지원 특별대출보증 금액+유동화 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 건 포함)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매출액·자기자본 한도

매출액	-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 -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회사채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 Ⅲ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기업어음 차환발행기업 지원
특별대출보증 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 건 포함) 기준

● 발행금리

- 중소기업: 신용등급별로 1.75%(K1등급) ~ 4.35%(K10등급) 수준
- 중견기업: 신용등급별로 1.75%(A등급) ~ 3.65%(BB- 등급) 수준
상기 금리수준은 2020.11.30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0.5~1.8%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신청·접수

● 연중 상시 발행

- 중소기업: 전국 영업점
- 중견기업: 유동화보증센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 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여부 결정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21년 보증공급계획(연간) 4.3조 신규 발행 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Q&A



Q.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대상 기업은 몇 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나요?

A. 신규 이용 기업은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조기 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용어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2-7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시적 경영위기기업 지원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신보가 주도적으로 기업개선에 필요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계속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총여신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기업, 신성장동력기업

* (경영상태 취약지표) 2년 연속 영업손실, 영업현금흐름 부(-), 자본잠식 상태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매출 30억원 미만 및 종업원 10인 미만인 기업, 업력 5년 이하, 부적합 업종*
- * 개인서비스, 농업·육가공, 인력공급, 슈퍼마켓, 의류소매, 음식점, 건설기계 임대 등
- ▶ 직접보증잔액 5억 미만,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증액보증 취급기업
- ▶ 부실사유 발생기업 등

지원내용

구분	V(I) 프로그램	V(II) 프로그램
지원방식	신보 단독지원	채권은행과 공동지원
지원기간	3년+1년(연장가능)	좌동
지원내용	▶ 신규보증(최고 50억원) ▶ 컨설팅(외부 경영진단) ▶ 보증료 차감 ▶ 만기연장 보장 ▶ 보험료 할인(10% 할인)	▶ V(I) 지원 ▶ 협약은행여신금리인하 - 최대 2% 금리인하 ▶ 만기연장
협약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청·접수

- 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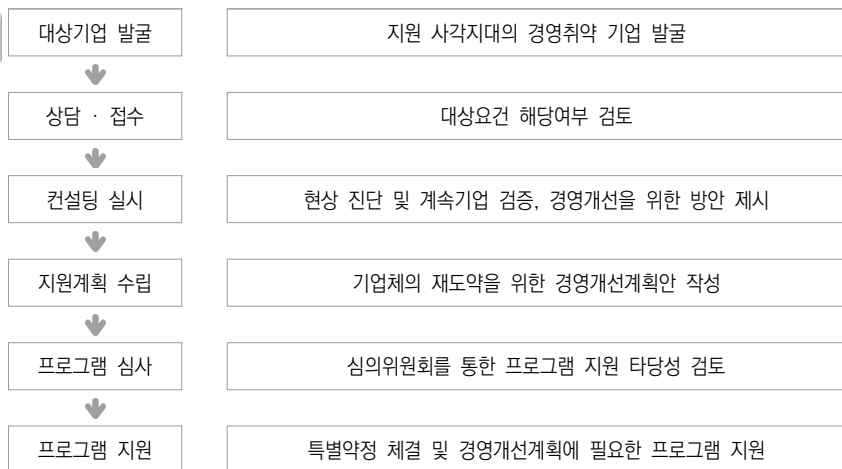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부실(심화)기업 등 대상 제외, 컨설팅을 통한 만성적 위기기업 선별, 심사 시 재도약검토표 및 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有) 운용

제출서류

- 재무제표 등 보증신청 관련 서류, 경영개선계획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연 100개 업체 이상 지원 예정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밸류업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심사 이전 경영상태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 종류에 따라 1~2개월의 수행기간이 필요하며, 컨설팅 완료 이후 프로그램 심사에 들어가므로 접수 이후 최소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

매출채권보험

국가가 보장하는 외상거래 안전망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 도모

지원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PLUS+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법인인감증명서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받을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보험상담

청약접수

신용조사

보험심사

보험료납부

보험증권 발급

지원규모

-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 * '20년 지원현황 : 20조 2천억원 전망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전화번호 상담은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A. 아래의 네 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

Q&A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보험금 지급청구시 아래의 서류를 신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관련 서류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인수증,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제내역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 받을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2-9

잡매칭(Job Matching)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지원내용

- 잡클라우드
 - 신보 채용포털을 활용한 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상시 구인·구직활동 지원
- 온라인 채용박람회
 - 채용전문포털사 연계를 통해 신보 추천기업 전용채용관을 개설하여 우수 중소기업과 우수 인재 일자리 매칭 지원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 기업의 채용수용에 맞게 인재를 선별, 추천

신청·접수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 잡클라우드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절차

- (잡클라우드)

회원가입

채용공고 등록(기업)

이력서 지원(구직자)

채용절차 진행

- (온라인 채용박람회)

기업 모집 공고

신청·접수

참여기업 선정

박람회 운영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모집공고

신청·접수(기업→신보)

인재 추천(유관기관→기업)

채용절차 진행

문의처

- 기업컨설팅부 컨설팅지원팀 ☎ 053-430-4688
- 신보 홈페이지 (www.kodit.co.kr) - 잡클라우드 공지사항 참조

2-10

컨설팅

기업 경영애로 해결 지원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경영진단과 심층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신보의 보증·투자·보험기업 및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개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연간 컨설팅 비용 지원금액이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지원 내용

-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회계, 생산관리 정보화(IT) 분야에 대한 컨설팅
- 특화컨설팅
 - 기업공개(IPO), M&A, 해외진출, 기술개발·사업화, 가업승계, 지식재산(IP)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 데이터컨설팅
 - 신용관리컨설팅(CRC컨설팅), 거래처위험관리컨설팅(CRM컨설팅), BIR컨설팅 등
 - * CRC(Credit Risk Control)컨설팅 : 기업의 신용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CRM(Customer Risk Management)컨설팅 : 기업의 거래처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
 - * BIR(Business Insight Report)컨설팅 : 보증심사 시 활용한 기업 분석정보를 보고서로 재구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능력을 배양
- One-Point 경영클리닉
 - 경영활동 중에 겪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컨설팅플랫폼에 질의하면 전문 위원이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온라인 무료 경영자문 서비스
- 지원한도

구 분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특화컨설팅	60 ~ 100%	최대 10백만원
데이터컨설팅	100%	최대 1백만원

신청·접수

- (경영·특화컨설팅) 컨설팅플랫폼(www.kodit.co.kr/consult)로그인 후 신청·접수
- (데이터컨설팅)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서 다운받은 컨설팅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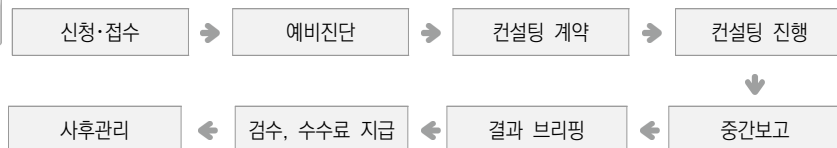
- 컨설팅 분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

* 신청순서, 신청사유, 애로사항,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 순서 결정

제출서류

- 컨설팅 신청서, 고객정보 활용동의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8억원 내외(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20년 지원현황(11월말) : 경영컨설팅 170건, 특화컨설팅 125건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컨설팅부 : 053-430-4693~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 컨설팅플랫폼이란?

컨설팅, 기업연수, 경영참고자료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비금융종합지원 온라인 포털사이트

2-1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평가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발굴·육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의 연계지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설립 3년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금융 지원
 - 보증료율 우대 (0.1%p 차감, 부분보증비율 85%)
 - 매출채권보험 우대 (보험료 15%할인, 보험인수비율 85%)
 - 금융지원 협약보증 운용
 - * 중소기업은행: 선정 평가 수수료 지원 등
 - * 우리은행: 보증료 0.2%p 지원
- 비금융 지원
 - 컨설팅 비용분담 비율 우대 (80%비용지원, 4백만원 한도)
 - * 메인비즈협회에서 인정한 '혁신역량 우수기업'의 경우 컨설팅비용 90%까지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메인비즈 홈페이지 (www.mainbiz.go.kr)
- 인증발급 소요기간: 3주 ~ 1개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처리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 관리시스템(www.mainbiz.go.kr)에서 신청기업이 직접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현장평가 신청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신청



현장평가 수행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및 확인서 발급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 사후관리 실시

지원규모

- 연간 경영혁신기업 3,900여건 선정

* '20년 11월 말 기준 선정현황 : 3,823건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 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 : 1666-5007 (www.mainbiz.go.kr)

용어설명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 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



제3부 기술보증기금

3-1 2021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10	3-15 기술평가	149
3-2 기술보증	111	3-16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제도	151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14	3-17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153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17	3-18 지식재산공제사업(구 특허공제사업)	155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120	3-19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57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123	3-20 기술신탁관리	159
3-7 혁신성장 산업 지원 제도	126	3-21 기술임치	161
3-8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129	3-22 TTRS(증거지킴이)	163
3-9 문화산업완성보증	132	3-23 보증연계투자	165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135	3-24 투자연계보증	166
3-11 기후기술보증	138	3-25 엔젤투자연계보증	168
3-12 R&D 보증	141	3-26 VC투자매칭특별보증	170
3-13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44	3-27 벤처확인평가	172
3-14 지식재산(IP) 평가보증	146	3-28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174

3-1 2021년 보증지원계획(총괄)

기술보증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21년도 총보증 규모는 26조원으로, 신규보증 4.7조원을 포함하여 총 24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보증잔액	224,000	255,141	260,000	+36,000
기술보증	221,000	252,476	258,000	+37,000
유동화회사보증	3,000	2,665	2,000	△1,000
보증지원	210,000	237,202	240,000	+30,000
기술보증	209,000	236,138	239,000	+30,000
신규지원	40,000	72,268	47,000	+7,000
유동화회사보증	1,000	1,064	1,000	-

● 중점지원분야(혁신성장·스마트제조서비스·수출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혁신성장산업	45,000	76,337	50,000	+5,000
스마트제조·서비스	3,750	6,174	4,000	+250
4차산업혁명프로그램	8,000	15,929	10,000	+2,000
수출중소기업	31,500	34,775	32,000	+500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2

기술보증

기술사업평가를 통한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대출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기업 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 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 '21.1.1 ~ 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 금액을 지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 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2021년 기술보증 23.9조원공급 예정(유동화회사보증 0.1조원 별도)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A

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기술사업성평가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3-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도모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부터 예측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주요 내용	우대사항
▶ 창업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하고, 창업 즉시 창업자금 지원,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및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증비용 우대(전액보증) • 보증료 0.7%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 평가료 면제 등

신청·접수 ● '21.1.1 ~ 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금액을 지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하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합니다.

3-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미래성장기반인 창업기업을 우대지원

기술력을 기반으로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창업후 7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이고,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부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지원	•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0.3% 고정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지원	• 보증비율 우대 95% • 보증료 최대 0.7%p 감면

신청·접수

- '21.1.1 ~ 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영업점에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적절한 보증 금액을 지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제출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 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 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맞춤형창업성장의 4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맞춤형창업성장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식문화창업	●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 대표자가 만40~59세 이하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 (첨단산업) 첨단기술, 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3-5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국잡보증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원대상

● 고용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국잡보증) 운영

구 분	분 야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쉐어링잡 (Sharing-Job)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은 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과거 1년전 대비 고용감소시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고용창출 (Track1)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웨어링잡 지원대상으로 추가

신청·접수

- '21.1.1 ~ 12.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업력, 업종, 고용실적 기술성, 미래성장가능성 등 일자리창출 관련 항목 포함

제출서류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21년 국장보증 지원규모 : 1.1조원

* '20년 지원계획 : 1.05조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일자리창출 한도가산의 경우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A. 운전자금 한도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 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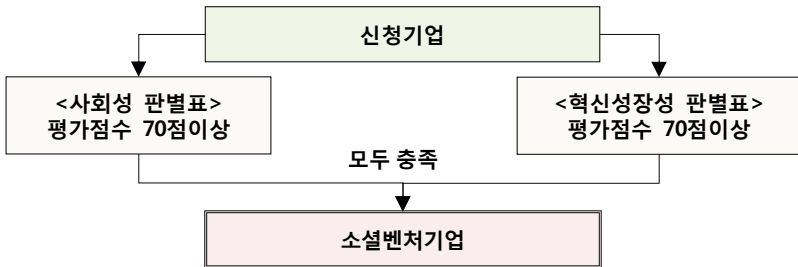
3-6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기업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술혁신 기업 및 공인(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자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구분	우 대 사 항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사정특례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	▶ 0.5%p 감면

신청·접수

- '21.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소셜벤처스퀘어(sv.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사회성, 및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포함한 혁신성장성 위주

제출서류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21년 소셜벤처임팩트보증 지원규모 : 1,350억원

* '20년 지원계획 : 1,15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Q. 소셜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별됩니다.

3-7

혁신성장 산업 지원 제도

미래 신성장산업 중점 육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초연결성(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 초지능성(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 및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제조혁신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팩토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IoT, AI, 바이오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과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 (Data, Network,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4.0스마트팩토리 보증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 기금의 자체구축 스마트 공장 판별표상 요건 충족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부가 공급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및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영위기업
 -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감면, 사정특례(2억원)
 -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감면
- 4.0 스마트팩토리 보증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 * 보증비율: 90% ~ 100%
 - * 보증료: 감면(0.5~0.3%p) 및 고정보증료(0.7% 또는 0.5%)
 - ※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 차등화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 (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1.4조원(정부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혁신성장산업의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의 육성분야 및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3-8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코로나19 대응 비대면·디지털분야 관련 기업 집중 육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과 비대면을 위한 기반기술인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 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보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정부 집중육성 분야이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비대면 기업 및 디지털 기업
 - (비대면기업)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제조 생산·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한 단계 이상 감소시킨 비즈니스 모델 영위기업
 - (디지털기업) 쏘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 분야인 D.N.A* 및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Data(데이터), Network(5G)(네트워크), AI(인공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Two-Track) 지원하되, 비대면 기업과 디지털 우수기술 기업은 “핵심기업”으로 분류하여 추가 우대지원
 - * (핵심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감면, 사정특례 (2억원), 전결권 완화
 - * (일반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감면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 (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 금융거래 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6,000억원(정부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비대면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중기부가 선정한 “①웨어러블 ②원격의료(진단, 치료), 병원·의료 관련 플랫폼 ③온라인 교육시스템 ④온라인 교육콘텐츠 ⑤원격근무, 화상시스템 ⑥온라인 홍보, 고객응대 ⑦스마트 금융 ⑧온라인 소비재(식품 등) 제조 판매 ⑨생활중개 플랫폼 ⑩스마트 상점 ⑪전자상거래 ⑫게임 ⑬콘텐츠 ⑭소통 ⑮여행·숙박·장거리이동 ⑯물류 플랫폼, 배송대행 ⑰드론·무인기, 자율차 ⑱빅데이터, AI ⑲가상현실(AR/VR) ⑳클라우드 ㉑로봇 ㉒사물 인터넷(IoT) ㉓지능형/차세대 반도체 ㉔5G ㉕정보보안” 분야를 말합니다.

3-9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크라우드펀딩 신청금액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되되, 제작비의 50% 이상(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분야,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미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혁신성장공동기준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한류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대출취급 금융기관 :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콘텐츠금융센터(서울, 경기, 부산)를 통한 현장 접수

* 문화산업완성보증은 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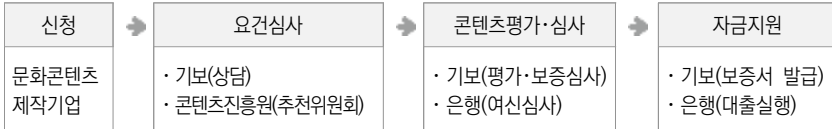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 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등),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콘텐츠 관련 서류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선판매계약서(해당되는 경우) 등 콘텐츠 관련 서류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 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지원규모

● 1,35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11)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061-900-6268)



Q.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A.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판매계약서 : 제작사와 구매자(배급사, 퍼블리셔 등)간 제작완성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화콘텐츠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달리 운용

(ex) 배급계약서, 퍼블리싱계약서, 티켓판매대행계약서, 프로그램외주제작계약서 등

3-1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프로젝트성 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 효과가 큰 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 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총제작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운전자금 보증지원가능금액
- ③ 총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용역공급계약금액 중 선수금등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공급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 대출취급 금융기관 :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 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 고객인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행정정보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요내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 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제3자와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획 단계에서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용역공급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산업

(ex)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에 의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영위 산업

(ex)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공연기획업 등

3-11

기후기술보증

기후기술기업 중점지원

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 발효('16.11)에 따라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 관련 국가전략에 부합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기여할 기후기술 중소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신청기술이 기후기술이어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기후기술R&D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기후기술 R&D성공 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기업자체 R&D과제 판단표'를 만족하는 과제 또는 최근 3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사업화	● 대상기술 기후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대상자금 기후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신청·접수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절차

단계별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기후기술은 무엇인가요?

A. 신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발생이나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과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처리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반 기술과 기법으로서, 기후변화 감시, 관측, 리스크 평가, 피해 저감 기술 등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말합니다.

3-12

R&D 보증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

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 of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 단계	• 대상과제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 자금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완료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R&D 개발단계 자금 및 사업화단계 자금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 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50,0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3-13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 보증지원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보증비용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광주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 운전자금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평가료 지원은행 확대(광주은행 추가)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임차계약서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고객의 사전동의 후 기금이 직접 수집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처리절차

-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처리절차

**지원규모**

-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 (업체당 최대 1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은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 (출원중 특허, S/W,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 재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3-14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식재산(IP)의 사업화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 지식재산(IP)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 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화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임차계약서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고객의 사전동의 후 기금이 직접 수집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처리절차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처리절차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2,5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자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3-15

기술평가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고, 평가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

제출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등)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처리절차

신청·접수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
예비평가	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
본 평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
기술자문/평가심의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
평가결과통보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16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제도

사업재기 자금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이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실패기업: 기보가 대위변제를 한 후, 기보에 대한 구상채무의 변제의무가 남아 있는 기업
 - 실패기업 및 재도전 경영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기업
- * 실패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경우
- ▶ 재기지원보증 신청기업이 기금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무 보유한 경우(다중채무자)
- ▶ 기타 상세내용은 영업점 담당자 문의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실패기업 연대보증인, 회생절차·신용회복지원절차 정상변제중 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 지원
-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
- 회생지원보증: 구상채무를 정상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 보증한도: 최대 30억원(회생지원보증 포함)
 - ▶ 신규 운전자금보증은 10억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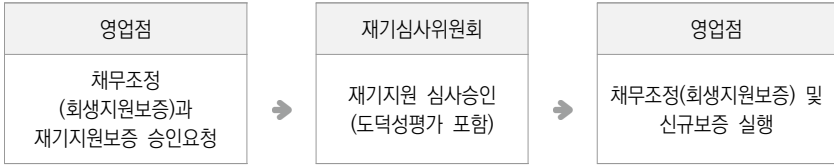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제출서류

- 보증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등
(세부사항은 신청 및 접수기관 문의)

처리절차



지원규모

- 기보의 기본재산을 활용한 운용배수 방식으로 운용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Q&A



Q. 재창업 재기지원보증과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재창업재기지원보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함께 중진공의 사업 자금 대출에 대하여 기보와 신보가 보증을 하고,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보 단독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과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으로, 보증대상 및 요건,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Q. 회생절차 · 신용회복지원절차 정상변제중인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가 있고, 이를 포함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절차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실패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변제 중이어야 하는 등 세부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17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우수 기술력 보유 성실실패자 재창업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이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지원내용

-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자금집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재창업중소기업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서류

- 보증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등 (세부사항은 신청 및 접수기관 문의)

처리절차



지원규모

-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900억원내에서 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재지원센터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Q&A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 A.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금 지원기관(기보,신보,중진공) 중에서 선택하신 1개 기관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평가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3-18

지식재산공제사업(구 특허공제사업)

지식재산(IP) 비용 부담 완화

기업의 납부 부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으로 국내·국제 출원, 국내의 심판·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입) 약관 위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공제대출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제외
- ▶ (대출) 부금납부 월수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 ▶ (대출) 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 ▶ (대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공제 약관을 참고 하실 것

지원내용

-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내·국제 출원, 국내의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 소송, 국내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접수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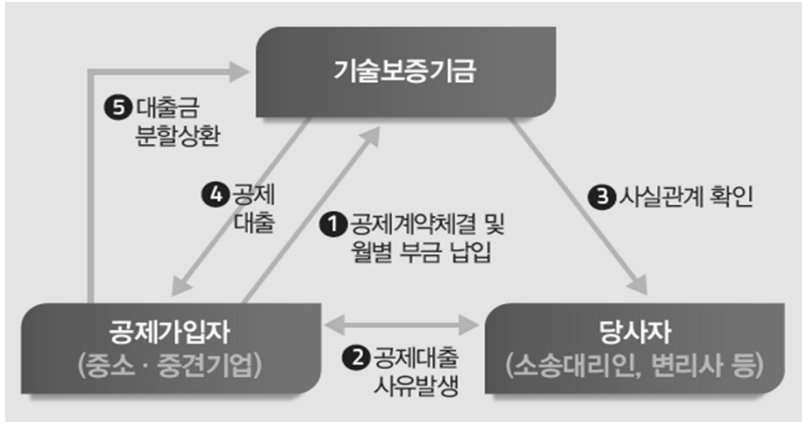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제대출 사유(지식재산 국제출원, 소송 등) 발생여부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등

제출서류

- 지식재산공제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등(홈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지원규모

- 공제부금 납부액의 최대 5배(최대 75억원)
 - * 부금월액은 30만원~1,000만원이며, 기업당 최대 3건까지 복수 가입 가능
 - * 6회 이상 납부 후 조건 충족시 대출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운영센터: 02-3484-8900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www.ipmas.or.kr

Q&A



Q. 지식재산공제사업인데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제외업종은 가입 불가)

Q. 부금 이자율은 고정금리 인가요?

A. 아닙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2020년 12월 현재 연 단리 1.75%)

용어설명

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3-19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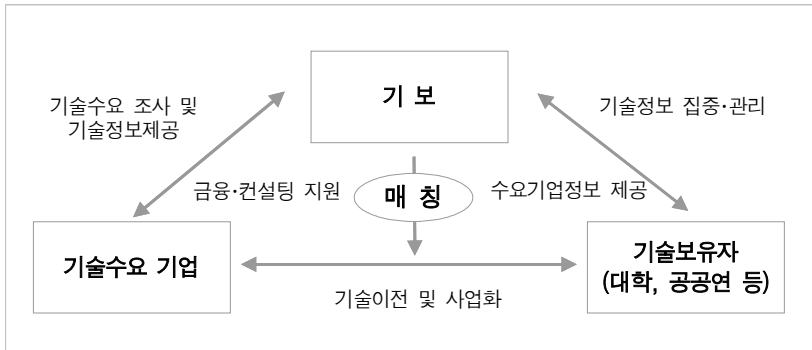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관련 산업 재산권 등의 정보제공, 기술보유자-기술수요자 간 거래 알선, 협상 및 기술사업화 필요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

지원대상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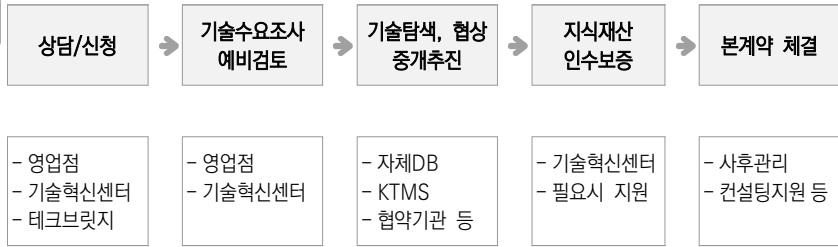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연중상시 접수)
 -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위한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상담 및 신청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전국 모든 영업점(기술융합센터 포함)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혁신센터)**
 -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혁신센터, 공공연구기관)**
 -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를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혁신센터, 공공연구기관)**
 -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혁신센터)**
 - *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용어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지식재산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지식재산 인수 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3-20

기술신탁관리

공정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중견·대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받아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위탁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 ▶ 위탁자가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 위탁자가 신탁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 기타 위탁자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지원내용

-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 *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최대 지원한도 450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부 R&D과제 신청시 평가가점 부여
 - *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 신탁기술이전에 대한 지식재산 인수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우대
 - * 기존 보증비율 95% → 100%로 우대 변경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에 신청 및 상담 후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체크리스트) KPAS(기보 특허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요건 확인
- (선별평가)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제출서류

-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
-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문의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Q&A



Q. 기술신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A. 신탁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특허의 경우 특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KPAS(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시스템) : 빅데이터(국내 전체 특허 DB) 처리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허기술(IP) 등급을 평가하는 모형이며, 현재 무료로 운영 중

3-21

기술임치

비공개 기술 노하우를 위한 보호수단

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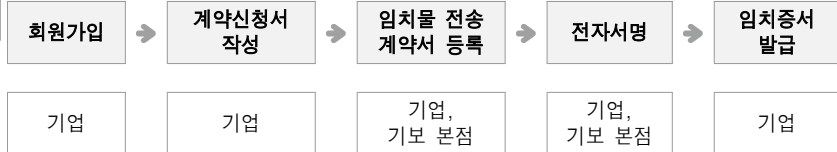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제출서류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처리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ts.kibo.or.kr)

Q&A



Q.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기술공개에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Q.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임치된 기술은 '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중략>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22

TTRS(증거지킴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대상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처리절차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ts.kibo.or.kr)

Q&A



Q. TTRS는 어떤 때 이용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약 1년간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제안 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허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 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A



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3-23

보증연계투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기보와 보증 거래 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법상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기업)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신도형기업
- * 단, R&D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 제한 적용 배제

지원대상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전환사채 인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보증금액 2배 이내, 보증금액 포함 1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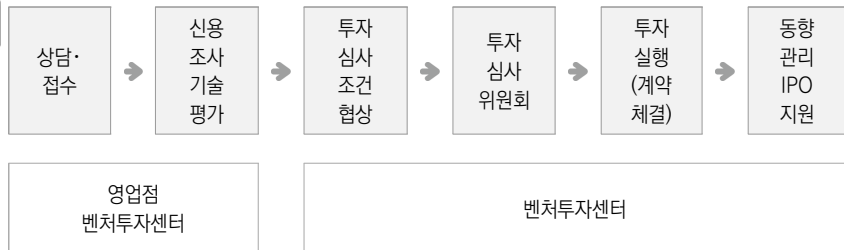
신청·접수

- '21.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400억원 ('20년 지원규모 26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3-24

투자연계보증

민간투자자 와 보증을 연계

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 상품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개인투자자 제외)이 투자한 기술혁신선도형기업

구 분	종 류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투자기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지원대상 투자

- *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분은 투자로 불인정

● 투자연계보증 지원 구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또는 기보, 신보, 재단 사고기업 등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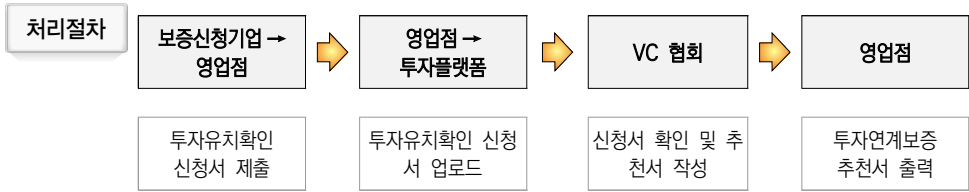
- 보증비율: 기술창업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료: 0.3%p 감면

신청·접수

-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사이버영업점으로 신청
- 신청기간: '21.1.1~12.31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규모 ● 연간 2,0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3-25

엔젤투자연계보증

엔젤투자자 보증금 연계지원

엔젤투자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 7년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투자 후 3년 이내) 엔젤투자기업의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신청일자까지의 기간
 - (3천만원 이상 투자) 3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미만인 기업**
 - * 보통주, 우선주에 한하며, 구주인수 및 현물투자는 제외
 - ** 법인설립일자로부터 보증신청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 보증신청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 기금 내규에 따라 제한되는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보증비율: 100%
- 보증료: 0.3%p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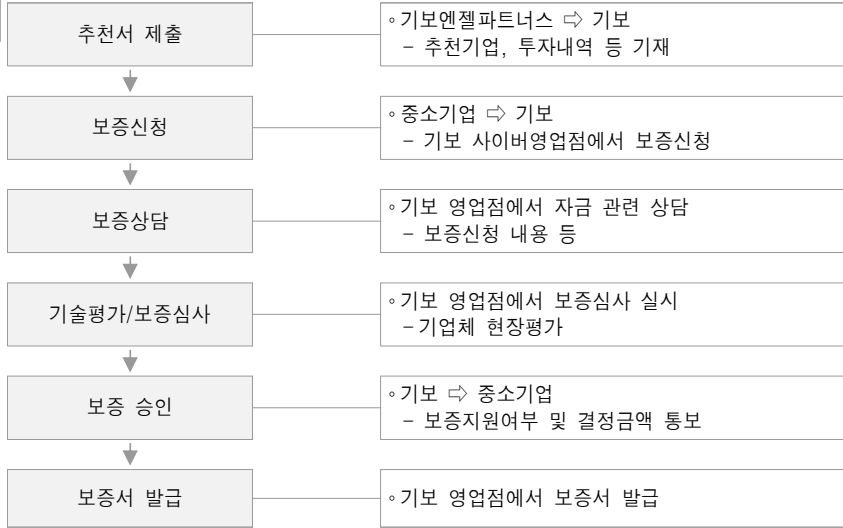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방법: 엔젤투자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기보에 추천 이후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또는 사이버영업점으로 신청
- 신청기간: '21.1.1~12.31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연간 2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Q&A



Q.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아닌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액도 인정되나요?

A. 기보엔젤파트너스의 투자금액만 인정됩니다.

Q. 투자실적 확인 기준시점은 투자계약일자인가요?

A. 투자계약 후 투자금 입금 및 자본금변동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기 일자를 기준시점으로 봅니다.

용어설명

기보엔젤파트너스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엔젤투자전문가 그룹

3-26

VC투자매칭특별보증

VC 투자시 유사규모의 보증지원

민간 VC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기업에 유사 규모의 보증을 레버리지방식으로 매칭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가속화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기보VC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투자요건) 보증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2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
 -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만 인정,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에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 신청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가장납입 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등 기금 내규에 따라 제한되는 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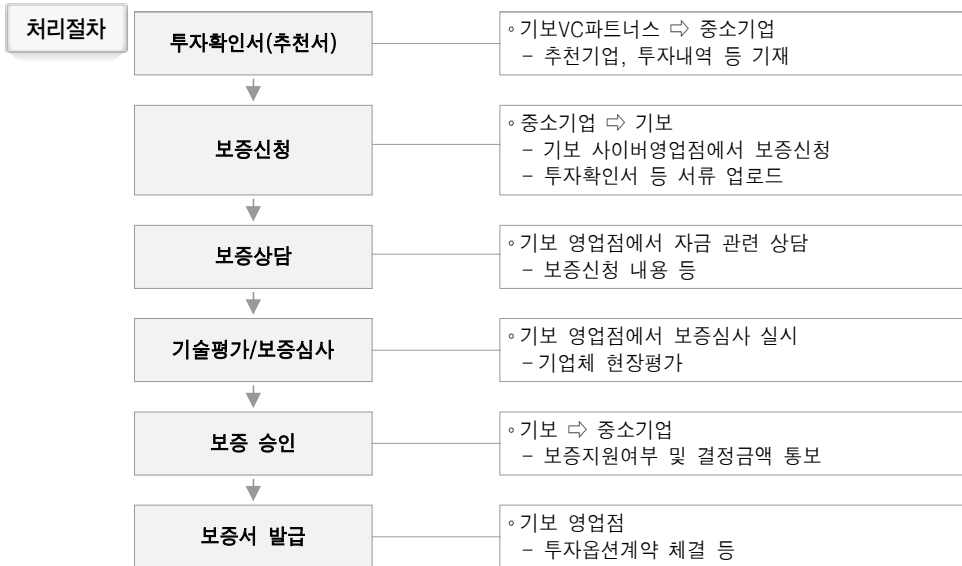
- 보증한도: 최대 50억원 (기보증금액 포함)
- 특례지원: 운전자금보증금액 20억원까지는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1/2까지 지원 가능
-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료: 1%(고정보증료)
- 성과공유: 투자전환조건 보증으로 운용
 - (옵션내용) 보증금액의 10% 이내에서 기보가 신주인수권을 취득
 - * (행사기간) 보증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가격) 행사 직전 투자 단가

신청·접수

- 신청방법: 기보 사이버영업점으로 신청
- 신청기간: '21.1.1~12.31 상시 접수

제출서류

- 투자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규모 ● 연간 2,000억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Q&A



Q. 기보VC파트너스로부터 투자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보VC파트너스인 VC로부터 투자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최근 6개월 이내 20억원 투자요건이 있는데, 기보VC파트너스 투자실적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벤처투자기관의 투자실적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전체 투자유치건 중 기보VC파트너스의 투자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용어설명

기보VC파트너스 : 벤처투자 활성화로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우수 벤처캐피탈(VC) 중 기보에서 선정한 투자 전문가 그룹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투자” 중 신규발행 주식(보통주, 우선주), CB, BW를 말함 (단, 현물투자 제외)

3-27

벤처확인평가

벤처특별법에 따른 확인평가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 공시 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 형	요 건
공 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 기술성 평가 우수 ▷ 보증·대출(가능)금액이 8천만원 이상 (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가능)금액이 총자산 대비 5%이상 (창업 후 1년미만인 기업 및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연구개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창업 후 3년 미경과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 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순번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평가료 등 ● 벤처 신규, 연장 평가료 및 수수료 동일

구 분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 후 6개월 이내 벤처신청시 확인 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연중 상시 접수**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기업유형 신청시)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및 연구개발비 산정표 등

* 신청양식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벤처확인 신청
(‘벤처인’)접수 및
현장평가평가결과 등록 및
확인서 발급정보공시
(‘벤처인’)

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벤처인 고객센터(1577-0270)

Q&A

**Q.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3-28

이노비즈(Inno-Biz) 인증평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평가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평가기관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고, ▶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 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 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 개별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신청제한기업

- ▶ 연체, 국세채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이노비즈 신청 가능)
- ▶ 이노비즈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

평가료 등

- 신규 평가료 70만원, 연장 평가료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이노비즈 인증평가와 벤처 확인평가 동시 신청시, 이노비즈 신규 평가료 20만원, 이노비즈 연장 평가료 10만원 감면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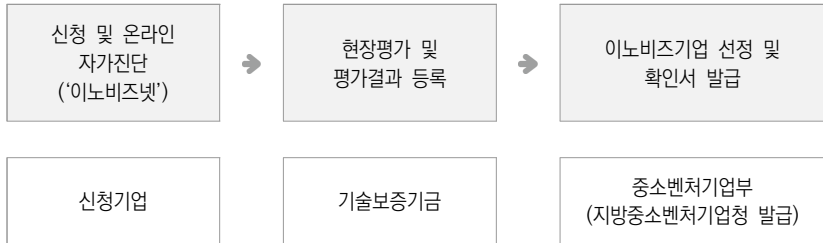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연중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고객센터(031-628-9686)

Q&A**Q. 이노비즈 실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 A.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 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 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제4부 기업은행

4-1 2020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178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179
4-3 IP사업화자금대출	180
4-4 IBK강소기업대출	181
4-5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182
4-6 IBK문화콘텐츠대출	183
4-7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185
4-8 IBK시설투자대출	186
4-9 IBK토지분양협약대출	187

4-1

2020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요상품

구분	주요 대출상품	상 품 개 요	비 고
우 수 기 술	스마트동산담보 대출	•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담보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	
	IP사업화자금 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수 출 입 지 원	IBK강소기업 대출	•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 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지원자금 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문 화 콘 텐 츠	IBK문화콘텐츠 대출	•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고부가서비스 산업지원 대출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시 설 투 자	IBK시설투자 대출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IBK토지분양협약 대출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	

4-2

스마트동산 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자금지원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동산의 담보자산 가치를 제고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대출한도 및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 소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담보감정평가액의 100% 이내
- (시설자금) 소요시설자금의 최대 90% 이내

대출기간

-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담보운용

- (대상) IoT 디바이스로 관리 가능한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 (주담보) 유형자산 최대 60%, 재고자산 최대 55% 이내 운용

우대사항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3

IP사업화자금대출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IBK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 기업. 단, IBK테크기업*은 IBK기업은행 신용평가 등급 BB 등급 이상
- * IBK기업은행 평가 전문인력이 기술력 심층심사를 통해 선정
-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기술등급) IBK기업은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TCB평가서 상 기술등급 T4 이상 판정 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당행 신용평가 등급' 및 'TCB평가서상 기술등급'에 따라 차등 운용
- (시설자금)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5년
- * 단,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서상 내용연수 이내에서 가능

담보운용

-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500만원)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64

4-4

IBK강소기업대출

유관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 문	대 상 기 업
수 출	1.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2.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 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 공인 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지원대상 기업(KOTRA)
기 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지원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4-5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수출입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4-6

IBK문화콘텐츠대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1. IBK문화콘텐츠 특례보증부대출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서(90%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규모

- 1,600억원(보증지원 한도 기준)

판매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 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추천 및 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기간

-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 95% 부분신용보증서
- ▶ 보증료 : 0.2%p 우대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 기준 준용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72

4-7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 공급(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주요내용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 전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을 보증하는 제도

☞ 프로젝트계약 후 최종 결제대금(보통 계약대금의 50~60%)을 계약완수 시점에 지급받는 시장관행(집중지불방식 heavy tail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 간의 금융 갭(gap) 해소

지원분야

-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대출기간

- 1년 (기간연장 시 최대 8년 이내)

담보조건

- 담보의 필요 : 기술보증기금 85%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보증서상 우선상환 보증특약 문구 부여되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후 수령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이 자동 상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72

4-8

IBK시설투자대출

시설 취득시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 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사업장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용자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4-9

IBK토지분양협약대출

토지분양 관련 소요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행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진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사항

-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의처

- IBK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제5부 한국수출입은행

5-1 2021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190
5-2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191
5-3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192
5-4 히트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193
5-5 기술금융 프로그램	194
5-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196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197
5-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199
5-9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201
5-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202
5-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204
5-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206
5-13 해외사업금융	208
5-14 수입금융(수입자금)	211
5-15 이행성보증	213
5-16 무역금융(수출관련)	215
5-17 해외온렌딩	217

5-1

2021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기술금융 프로그램
 - 상생금융 프로그램
 -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 야		상 품 명
대 출	수 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 입	수입자금
	해외사업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보 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 출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 입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5-2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

뉴딜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단,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대상

- 뉴딜 품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 지정 품목

지원내용

- 뉴딜 품목에 대한 맞춤형 우대 지원
 - 대출한도* 확대(최대 10%p) 및 금리 우대(최대 △1.0%p)
 -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에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K-뉴딜 SME 크레딧라인」 설정
 - 지원상품 : 모든 대출·보증상품
 - 차주별로 금융상품을 일괄 취급하기 위한 연간 통합 한도를 설정하여 신속 지원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3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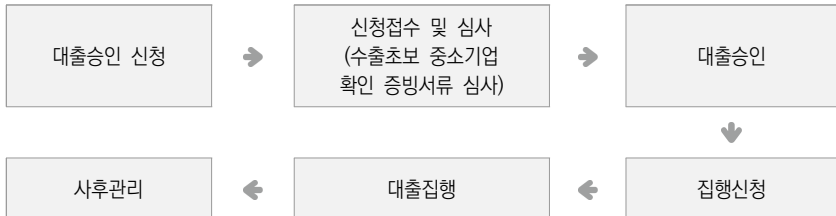
지원대상

-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등의 비금융서비스 제공
-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4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지원을 통해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실행절차

- 기업신청 → 육성기업 선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기업신청

- * 신청자격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또는 정부의 월드클래스 프로그램 지원대상 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 서비스산업·에너지신산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중소여신부점 및 출장소
- * 선정기간 : 선정시마다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

- 육성기업 선정

-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기술력, 성장잠재력, CEO역량) + 재무안정성
- * 선정절차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기술평가, 방문심사)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맞춤형 서비스제공 및 지속 사후관리

- * 금융서비스 :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맞춤형 금융 제공
- * 경영정보서비스 : 성장전략코칭, 환위험컨설팅, 국제금융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등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 * 매년 육성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 취소 등 지속 사후관리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3779-6435 / 02-6255-5291

5-5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신용 평가를 의뢰하여 산출한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으로 신용등급 평가를 대체하거나, 신용등급평가지 기술력을 적극 반영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 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① 기술신용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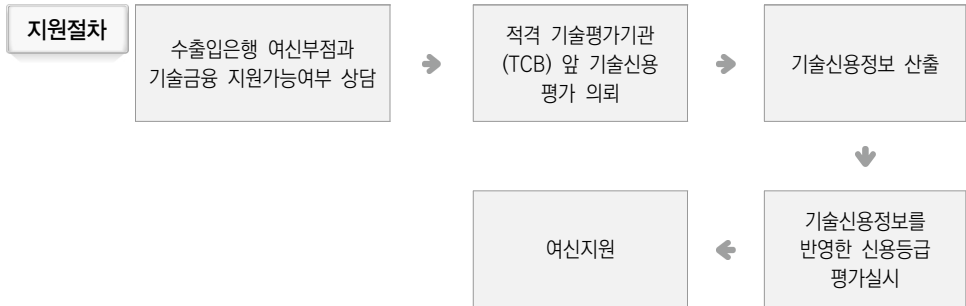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지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6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상생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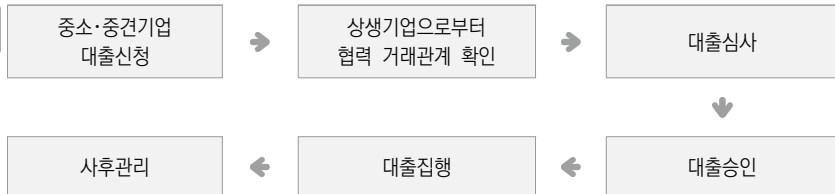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 상생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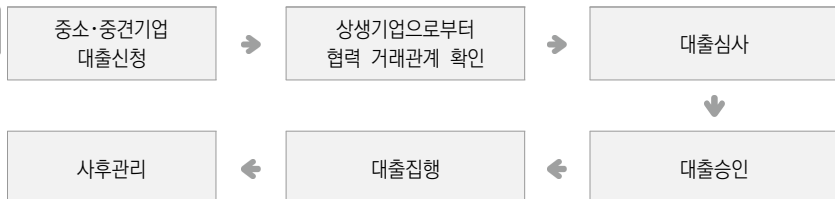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기업 앞 수출 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기업의 해외주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8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이 납품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상생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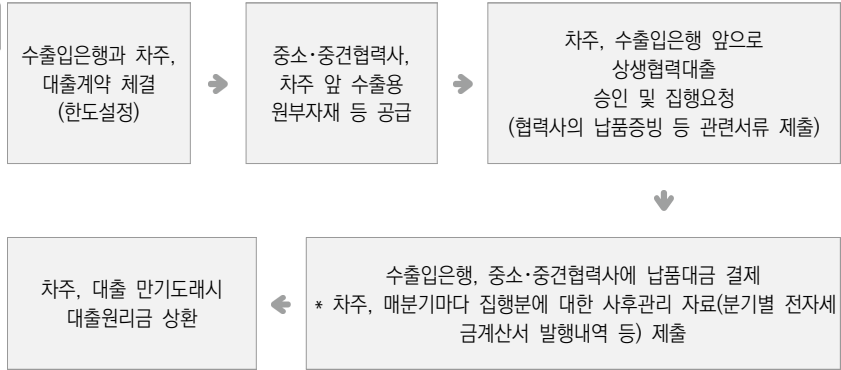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대출조건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전월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중견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대출금액 :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금융1부 : 02-6255-5405 / 02-6255-5407
기업금융2부 : 02-6255-5168 / 02-6255-515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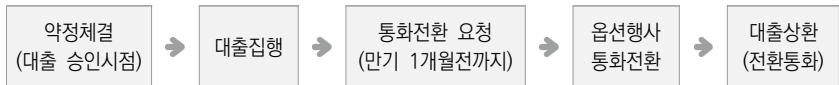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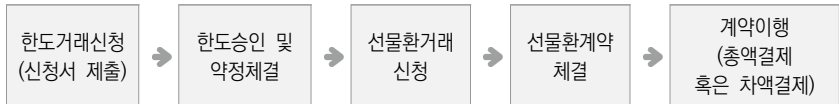
● 통화전환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 선물환거래

- 개요 : 중소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실행절차



비금융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 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 관련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 게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히든챔피언팀(02-6255-6435)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02-3779-6667)

5-10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단,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단,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함)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용도 등
-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 대출한도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지분인수인 경우에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 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8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광주지점 : 062-232-694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7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대구지점 : 053-260-41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전주지점 : 063-271-613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인천지점 : 032-235-6114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5-11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소재 산업, 유망소비재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350억원(유예중소기업 50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500억원(유예중소기업 800억원)까지 증액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 약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 용도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2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지원내용

-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복수혜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 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3

해외사업금융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투자자금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

지원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인 국내 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9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
-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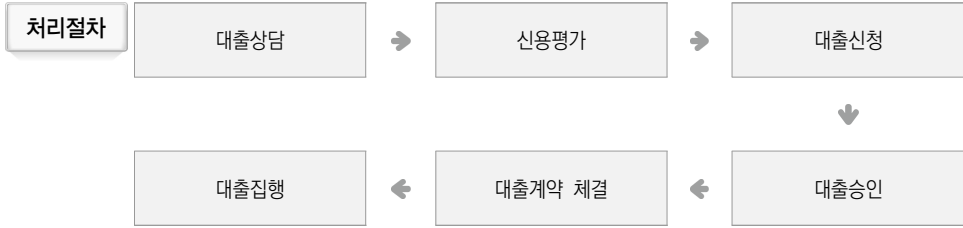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단,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 5년,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 가능) 이내

신청 ·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해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4

수입금융(수입자금)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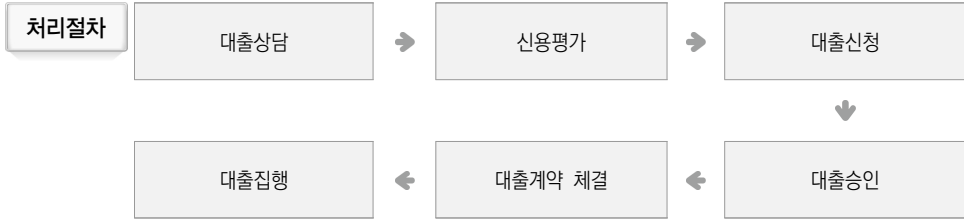
-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80% 이내 (중소기업은 90% 이내)
- 대출기간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10년 이내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지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5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 앞으로 제공 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 앞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이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기타이행성보증 :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

보증금액
(기간)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

신청 ·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83 / 02-6255-5292
중소기업금융2부 : 02-6255-5308 / 02-6255-5305

-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전주지점 : 063-271-6134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 수원지점 : 031-259-6607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5-16

무역금융(수출관련)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대상거래
 - 수출환어음매입 :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 송금방식(O/A)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일정 등급(당행 기준) 이상 국가 소재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 대상금액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 대상결제기간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환어음의 만기조건이 30일이상 2년미만
 - 수출팩토링 : 거래방식, 수입자 신용도에 따라 수출채권의 결제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내
 - 포페이팅 : 어음 또는 수출채권의 만기조건이 30일 이상 2년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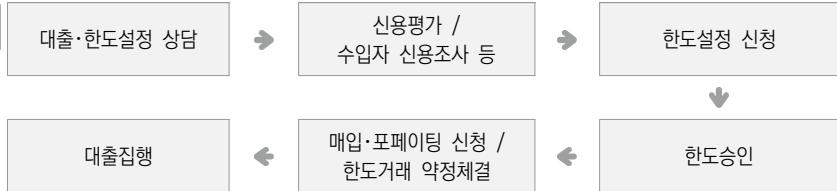
신청 ·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지점 및 출장소

제출서류

-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한도설정/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명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464
-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구지점 : 053-260-4100
- 창원지점 : 055-287-6830
- 울산지점 : 052-274-5276
- 광주지점 : 062-232-6944
- 전주지점 : 063-271-6134
- 대전지점 : 042-489-9715
- 청주시점 : 043-237-0475
- 수원지점 : 031-259-6607
- 인천지점 : 032-235-6114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5-17

해외온렌딩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수출형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및 혁신성장 영위 중견기업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만 가능

- '20.11월 현재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신한베트남은행,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하나중국은행, 우리베트남은행, 우리중국은행, 우리소다라은행, 하나브라질은행, 하나멕시코은행

지원내용

- 대상거래

- 수출촉진자금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대출금액

- 소요자금 또는 수입금액의 90% 이내(단, 수출촉진자금의 경우 대상기업별 대출한도 기준에 의해 별도산정)

● 우대프로그램

- ①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②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앞 추가한도 배정 또는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수출촉진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시설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 수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그 외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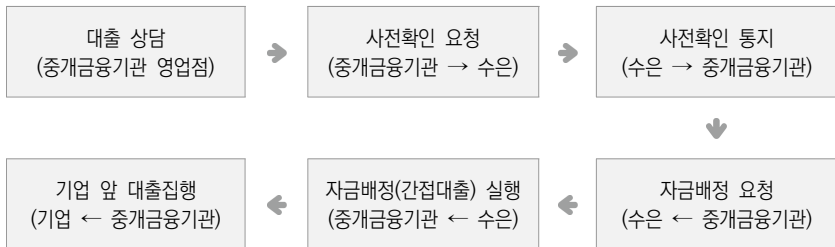
신청 · 접수

- 해외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 문의

제출서류

- 중개금융기관의 제출 필요 서류와는 별개로 해외온렌딩 대상기업 적격검토 서류(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처리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6255-5214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02)784-1030

부 서 명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중견 금융1부	상생금융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 수출초보기업 및 취약산업 지원 E-mail: smesupport@koreaexim.go.kr	(02)6255-5287	(02)3779-6725
중소중견 금융2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E-mail: smallbiz@koreaexim.go.kr	(02)3779-6304	(02)3779-6744
서비스 산업금융부	서비스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newgrowth@koreaexim.go.kr	(02)6255-5270	(02)3779-6779
전대금융실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E-mail: iec@koreaexim.go.kr	(02)3779-6369	(02)3779-6746
무역금융실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국환업무(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해외온렌딩 E-mail: strade@koreaexim.go.kr	(02)3779-6480	(02)3779-6764



>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 TEL: (02)3779-6114 / FAX: (02)784-1030

〈국내지점〉

지 점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 지	천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E-mail: inch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10
	수 지	원 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7	031)259-6609
중부권	대 지	전 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 지	주 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 지	산 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 지	구 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260-4100	053)754-1020
	창 지	원 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 지	산 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5276	052)274-5278
호남권	광 지	주 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빌딩 13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 지	주 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 8	063)271-6139
출장소	구 출 장	미 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054)462-7103	054)462-7105
	여 출 장	수 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신사옥 3층 E-mail: yeosu@koreaexim.go.kr	061)643-7714	061)643-7716
	원 출 장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033)748-0536	033)748-0538



제6부 한국산업은행

6-1 온렌딩대출	222
-----------------	-----

6-1

온렌딩대출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상품별
지원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기본 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외화자금(USD)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리스자금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특별 온렌딩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범위 기업 등 *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확인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지역경제활성화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며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인증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공급 기업(스마트공장추진단 등 인증, 「혁신성장 공동기준」 스마트공장 분야 관련 산업)
	창업·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설립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친환경기업지원	▷ 아래 친환경사업 범위 중소·중견기업 및 동기업 해당대출 구매용 자금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자동화 중 차세대 동력장치,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테마 관련 사업, 에너지효율화 설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구 분	지 원 요 건
재도약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7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중견기업 ▶ 최근 2년 이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 (A,B,C등급) ★ 단,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0~11등급 해당 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 승인 기업(승인일 7년 이내)
스마트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등의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300개) 관련 사업 영위 중소기업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시설투자	▶ 혁신성장 등 기존 특별온렌딩 지원분야 영위 중소기업 ▶ '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및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산업 영위 중소기업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섬유, 가전 등
바이오헬스	▶ 보건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온렌딩 지원요건 내 6T 중 BT 관련 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E)건강진단 품목 관련 산업 영위 중소기업

*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리스자금 온렌딩대출은 10개 여신전문금융회사(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규온캐피탈)를 통해서만 취급

대출기간

구 분	대출기간	거치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	3년 이내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	6개월 이내
리스자금*	1년 이상 5년 이내	6개월 이내

신청·접수

-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영업점 문의
- '19.11월 현재 온렌딩 약정체결 중개금융기관
 -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씨티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애규온캐피탈

지원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 기업금융정보 → 온렌딩대출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 ~ 0580

Q&A



Q 온렌딩대출 신청은 산업은행에 가서 직접 해야할까요? 근처에 산업은행 영업점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A 평소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 등 중개금융기관 영업점으로 가셔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중소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렌딩대출은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7~11등급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 절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부 한국무역보험공사

7-1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226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228
7-3 수출신용보증(매입)	229
7-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230
7-5 단기수출보험	231
7-6 중소중견Plus+보험	234
7-7 환변동보험	235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237
7-9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239

7-1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원대상

-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 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유의사항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 월의 27일까지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사이버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중견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 (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 부과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공인인증서(법인: 법인용 공인인증서, 개인: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이용 시 제출서류 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 ▷ www.ksure.or.kr 접속
-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또는 cyber.ksure.or.kr)
- ▷ 회원가입 → 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송부 → [공사 승인]
-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신청 즉시 자동승인

로그인

- ▷ ID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절차

-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청/조회 - 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 공사 DB검색
-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3주 소요)
-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청/조회 - 신청내역/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 ▷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보증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 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절차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지원규모

- 3,935개사 앞 16,127억원 지원('20.10월말 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3

수출신용보증(매입)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분야

- 수출대금 결제기간 1년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출기업 수출통지 생략 및 연간 보증료 1회 선납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및 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취급은행

- 4개 은행(신한, 하나, 국민, 우리)(‘20.10월말 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4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금융기관이 수입자 구분 없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선적 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대지급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분야

- 대출기간 180일 이내 통관 및 비통관* 수출거래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

지원내용

- 수출기업이 모든 수입자와의 외상 수출거래 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보력을 높인 보증 상품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료 인하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주주현황표, 고객정보이용조회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평가 → 신용보증 청약 → 보증한도 책정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선적서류 매입

취급은행

- 3개 은행(신한, 하나, 국민)(‘20.10월말 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5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 별 보 험	포 괄 보 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 (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 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이내 • 중계무역 : 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 험 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6

중소중견Plus+보험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1년간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기업 100만불, 중견기업 30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필수가입)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필수가입)	중소 최대 1백만불 (중견 최대 3백만불) [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선택	최대 1백만불 [클레임 위험의 경우 최대 5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고위험인수제한국 및 이란 소재, 수입자 R급, 30일 이상 결제지연 제외 [최대 50개사]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절차

-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 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지원규모

- 25,031개사 280,713억원 지원('20.10월말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7

환변동보험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 및 중견 수출입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업체도 지원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해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일반형 기준)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수출형 기준)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 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 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완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이익금 납부 없음
부분보장 옵션형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단, 통화당 최대 80원까지 보장)	이익금 납부 없음
범위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일정범위 내 환위험 노출
범위제한선물환	환율 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시 이익금 납부	보험금과 이익금을 일정범위 (±50원) 내로 제한

* 자세한 상품 설명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www.ksure.or.kr/fx/index.do)에서 확인가능

신청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헷지수요 조사표
-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별 고유양식 제출가능)
- 약정서 및 주주현황표
-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처리절차



보험료

일반형	보험료율=기본요율 x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
옵션형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할인율 적용

**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배제(매일 일자별 홈페이지 고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무역협회, 지자체 등에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중(공사 홈페이지 내에서 세부요건, 지원 내역·절차 확인 가능)

청약및결제

-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 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헷자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고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7-8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글로벌공급망)

수입거래 지원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 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수입 품목

(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주요자원(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및 시설재 등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화면 내 대상거래를 통해 확인

(글로벌공급망)

-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비재, 사치성 물품 제외)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모율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지급보증)원금 + 약정이자
- 글로벌공급망 : 금융기관 손실액의 90%

지원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 거래(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E급 이상 제조업체,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D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글로벌공급망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D등급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제조기업

신청·접수 ●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제출서류 ●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보험종목 → 수입보험 → 신청서류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6개사 11,091억원 지원('20.10월말기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7-9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해외 미수채권 회수

수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 공사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해외채권 회수컨설팅(무료) 및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출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채권자의 공사 신용등급이 R등급*, 공사가 청구한 수수료 등 미납 시, 수입관련 선수금, 사인 간 금전거래 채권
-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책정한 불량등급

지원내용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 해외 미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 되는 수출기업 과 공사의 채권회수 노하우를 공유하여 자체회수 지원 등 회수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 해외채권 회수대행
 -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에 대해 공사가 보유한 추심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채권회수 대행
 - * 40개국 104개기관 해외추심기관과 협약 체결

유의사항

-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 수준은 채무자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추심기관 수수료 약 25% 및 공사수수료 4% 내외 수준(부가세 별도)
- 추심대행 약관 등에 따라 회수대행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클레임 제기 건, 채무자 파산·회생절차 신청이 완료된 건 등
- 해외채권 회수율은 1년만 지나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감안 조기 회수상담 권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해외채권 회수컨설팅 기능 추가

신청·접수

- 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센터」로 신청 접수 시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상시 접수 가능)

상담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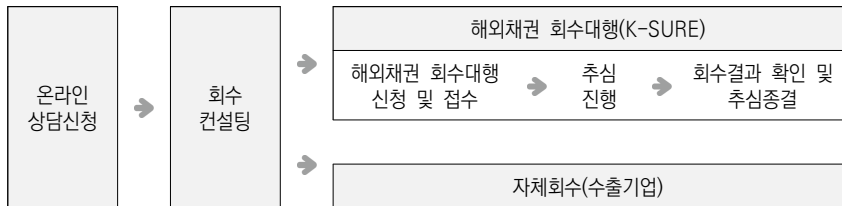
- 해외채권 회수대행 절차 안내 및 회수컨설팅

신청서류

- 채권자 관련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 채권관련 서류
 -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 서신, 기타 참고서류 등

이용절차

-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Q.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 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공사의 보험사업과는 무관하며 채권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Q. 회수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 A. 채권의 예상 회수기간은 채권의 상태와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진행되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가 위임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일 : 2021년 1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8913

팩 스 : (042)481-6860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